

家庭病理와 社會福祉에 關한 研究

1982 年度

社會保障審議委員會
鄭 福 蘭



머 리 말

現代社會에 있어서 社會的 特性은 항상 社會問題를 創造하는 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福祉의 對象을 增大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現代社會의 諸狀況이 急激하게 都市化, 近代化, 産業化, 官療制化, 大衆化로 變貌함에 따라 社會病理現象이 發生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倒産, 失業, 貧困, 슬럼 (Slum), 犯罪, 賣春等 傳統的 社會病理現象에서 心身障害, 交通事故, 公害, 少年非行, 老人問題等 現代的 社會病理現象에 이르기까지 그 範圍나 形態는 多種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傳統的 家族制度가 그 構造面에서나 機能面에서 變化되어 가는 過程에서 家族病理現象도 數多하게 發生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離婚이나 家出, 欠損家族, 貧困家族, 老人世帶 등에서 離婚·家出은 家族集團의 病理의 結果現象이며 父母의 欠損으로 發生되는 欠損家族과 父母不在에 따른 Key child인 疑似欠損家族으로서의 留守家族이 있으며 貧困家族은 貧困으로 困한 問題이며 老人世帶는 核家族화와 老令化에 의한 問題가 課題가 되어 있다.

家族 및 家族集團의 病理에 關한 理論과 比較學的 資料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家族病理의 發生條件과 病理의 實態, 病理의 結果現象을 福祉에 關聯하여 그 實踐方案을 檢討하려고 勞力하였으나 基礎理論에 멈추고 말았다.

앞으로 계속하여 病理現象의 發生條件, 實態, 結果現象에 대한 調查研究

를 통하여 病理의 診斷 및 處方뿐만 아니라 病理豫防案을 提案함으로서
本 研究에 보충코저 한다.

目 次

第一章 家族病理 研究의 理論	3
第一節 社會病理學 概念	5
第二節 家族病理 研究의 理論과 方法의 關聯	6
第二章 家族의 構造와 그 變動	9
第一節 家族의 概念	11
第二節 近代家族의 危機	15
第三章 家族集團의 病理	21
第一節 家族의 解體	25
(一) 家族解體의 意義	25
(二) " 要因	29
(三) " 論理	30
(四) " 諸形態	39
第二節 家族集團病理의 具體的 現象	43
(一) 離婚	43
(二) 家出	49
(三) 欠損家族	49
(四) 貧困家族	54
(五) 老人世帶	58
第四章 家族集團의 病理와 福祉方法論	63
第一節 社會病理學과 社會福祉의 關聯	65

第二節 家庭病理에 있어서 實踐課題 (方法論)	69
(一) 社會福祉 技術과의 關聯	69
(二) 社會福祉 經濟政策과의 關聯	71
第三節 家庭病理와 社會福祉研究的 接點	75

第一章 家族病理 研究의 理論

第一章 家庭病理 研究의 理論

第一節 社會病理學의 概念

病理學이라는 名稱은 古代로부터 醫學에서 使用하던 用語로서 病理學 (pathologia)의 語源은 希臘語의 파토스 (παθος = 苦痛, 受難, 悲哀)에서 由來한 것이다. (註 1)

社會病理學은 人體와 社會와의 接近을 前提로 하는 「社會病」의 研究인 것이며 이와같은 發想은 明白히 社會問題의 存在와 社會有機體說(Social organism)의 成立을 前提로 하고 19世紀末에 생긴 것이다.

社會病理學 (Social pathology)은 「社會的 有機體」의 進化의 過程에서 나타나는 「社會的 異常 (anomalie sociale)」에 대한 歸納的 研究이며, 社會學의 重要한 一部門으로서 位置하고 있다.

社會的 異常은 經濟, 技術, 政治의 三領域에서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1) 經濟領域의 異常

經濟的 停滯, 豫測의 欠如, 貯蓄心·計劃性·發明精神의 不足, 不良品의 增大, 富의 不平等, 流通의 不安全.

(2) 法律領域의 異常

正義에 대한 無感覺, 他人의 權利를 輕視, 不公平하게 買收된 裁判官,

動產·不動產·金融取引·商工業에 대한 無保證

(註 1) 社會病理學, 大橋薰著, pp 24 ~ 30.

(3) 政治領域의 異常

內亂, 閣僚의 交替, 政府의 顛覆, 國家豫算의 不足, 過重한 租稅,
公債支拂의 停止

이와 같은 現象은 「進涉의 進化法則」을 實現하는 手段이 正常的인 狀
態에서 「逸脫 (deviation)」에 있고 「社會病 (maladie sociale)」이라
고 생각된다.

社會病理學은 「社會診斷」으로 생기는 것이며 社會學者의 批判 (診斷) 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paul V. Lilienfeld는 「社會的 有機體 = 社會體 (co-
rops social)」의 total인 構造의 認識을 前提로 하여 社會的 異常 =
「社會病」의 發現過程을 科學的 · 體系의 으로 追求하고 「社會臨床學 (the-
rapeutique sociale)」과 「社會的 醫術 (art medical social)」의 必要를
역설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第二節 家庭病理 研究의 理論과 方法의 關聯

社會病理의 發生原因을 說明하는 것으로서 社會構造의 欠陷, 社會變動의
왜곡, 資本主義의 矛盾으로 設定하고 있다.

(→) 社會構造論의 으로 接近하는 立場은 病理現象을 靜態的인 것에서 그 病
理를 社會構造와의 關聯에서 解明하고 있다.

社會病理는 그것을 分析하는 社會構造의 次元과 單位에 基盤을 두고
다음 세가지 種類로 分類하고 있다.

(1) 社會階層을 單位로서 본 病理現象이며 그 研究의 次元에는 社會階

層과 아노미 (Anomie)의 病理의 關係가 分析된다.

- (2) 地域社會를 單位로서 본 病理現象이며 그 次元에서는 地域社會와 社會解體와 病理의 關係가 研究된다.
- (3) 小集團과 成員을 單位로서 본 病理現象이며 이 次元에서는 小集團 그 成員과 逸脫行動의 病理의 關係가 分析된다.

따라서 家庭病理研究는 세번째인 家庭이라는 小集團과 그 成員을 單位로서 小集團의, 部分社會的, 個人的레벨에 있는 可視的·具體的病理에 대한 研究이다.

小集團과 그 成員의 次元에서는 行動逸脫的 病理가 小集團(家庭)의 社會構造와의 關聯에서 分析된다. 社會近代化는 價值·規範樣式的 分化를 促進하여 多數의 小集團과 그 成員에게 여러가지 行動逸脫的 病理를 增大시키고 있다.

㉑ 社會變動論的으로 接近하는 立場은 現代社會에서 急激하고 광범위한 社會變動중에서도

- (1) 産業構造의 變化
- (2) 巨大都市化
- (3) 大衆社會化
- (4) 官僚制化

等이 誘發하는 家庭構成員과의 病理를 動態的으로 解明하는 研究이다.

㉒ 社會體制論的으로 接近하는 立場은 資本主義體制的 矛盾으로서 나타나는 「非人間化 (impersonalization)」의 病理이며 人間の 商品化, 奴隸化,

「自己疎外 (self - alienation)」의 病理이다.

社會病理學에 있어서 狹義의 意味에는 社會有機體論이나 生物病理學의 接近으로서 S.A. Queen , D.M. Mann , J.M. Gilin , J.D. Gilin 等으로 構成되는 社會的 不適應의 理論이 있고 廣義로는 아노미論, 社會解體論, 行動逸脫論 등의 總稱으로서의 社會病理學이 있다. 그러나 病理概念, 病理性判定의 基準, 그 測定方法에 대한 體系化·綜合化는 困難하며 統一된 見解는 確立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社會病理學의 理論과 立場으로서는

- (A) 社會的 不適應論
- (B) 社會的 參與論
- (C) 社會的 疎外論
- (D) 社會緊張論
- (E) 아노미論
- (F) 社會解體論
- (G) 逸脫行動論 등이 있으며 現在의 社會病理學의 支柱로서는 아노미論, 解體論, 逸脫論에 대하여 三者가 論議되고 있다.

第二章 家族의 構造와 그 變動

第二章 家族의 構造와 그變動

第一節 家族의 概念

(一) 家族의 機能論

家族은 古代로 부터 結婚과 血緣을 基礎로 하여 存在하는 基礎的 社會團體이다.

더구나 家族은 日常的으로 住居, 食料 및 經濟生活策을 共同으로 하며 夫婦와 그들의 子女養育은 相互協助하여 원활한 人間關係를 營爲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的 單位集團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統合된 集團인 運命共同體이고 生活共同體라 할수있다.

家族機能을 基本的機能과 歷史的機能으로 區分한다면

前者인 基本的機能에는 子女生産機能, 子女養育機能, 人間結合의 愛情機能 夫婦間의 性慾充足機能 등이 있으며

后者인 歷史的機能에는 家族構成員의 經濟生活을 保證하는 經濟的機能, 家族財産이나 個人的 生命을 自然의 猛威, 野獸의 攻擊, 人間의 侵人으로부터 防禦하는 保護・防衛的인 機能, 家族이 한자리에 모여 慰安을 받는 慰安娛樂的인 機械, 家族間의 地位에 따라 行動하여 集團의 秩序를 지키는 規律的機能 등이 있다.

그러나 機械文明의 急速한 發達에 따라 農耕時代에서 機械文明時代로 變化되어가고 있는 過程에서 生活이 合理化하고 思想的으로도 個人主義와 自由主義 思想이 發達함에 따라 家族의 歷史와 機能은 變化衰退하고 있다. 保護防衛的인 家族의 機能은 警察이나 軍隊에, 教育機能은 學校集團

에, 慰安娛樂의 機能은 商業的 娛樂機關에 移行하고 家族은 오로지 社會的으로 承認되는 性愛, 生産機能과 情緒安定의 休息所의 機能程度로 家族機能의 變化를 볼수 있다.

家族의 普遍的 機能論을 主張하는 社會人類學者 Murdock 은(註 2) 모든 社會에 있어서 家族은 社會를 위하여 普遍的인 一定한 機能을 遂行하는 것으로 假定하고 家族의 普遍的 機能을 性慾充足, 子女生産, 經濟的 協同 및 子女養育 등으로 들고 있다.

社會가 계속하여 存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基準活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性慾充足과 子女生産의 機能없이 社會는 滅種될 것이며 家族의 經濟的 協同없이 는 生命의 延長이 不可能할 것이며 子女들을 養育하며 教育하지 않으면 文化의 傳達이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이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役割이 家族사이에 分擔되어 있으며 이 役割遂行을 위하여 夫婦나 父母・子女間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家族은 이러한 機能을 위하여 가장 效率的이며 적합한 組織體인 것이다.

(二) 家族의 構造論

家族의 機能論이 核家族의 機能에 초점을 둔데 대하여 構造論은 親族關係에 關心을 두고 家族關係를 役割構造의 측면에서 分析하되 그 범위를 結婚과 血緣으로 인하여 조성된 더 넓은 親族 集團構造에서 접근코져 하는 것이다. 構造論에서는 親族制度가 規定하는 地位에 관련된 役割

註 2) George Murdock, "The universality of the Nuclear Family" in N. W. Bell.

이 중요하며 家族은 그들의 役割을 社會的 狀況에 맞게 統制하며 적응하는 技術을 發展시켜 家族個個人에 대한 統制的 役割을 제대로 행사하게 될때 安定된 社會가 계속될수 있을 것이다.

Le play 는 歷史上 나타난 家族構造의 形態를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註3)

(A) 家父長制 大家族 (the patriarchal family)

(B) 個人中心의 不安定한 家族 (the unstable family)

(C) 直系家族 (the stem family)

(A) 父系制 大家族制度는 農牧民이었던 아시아와 中歐地方의 制度로서 家父長制의 權威主義는 家族主義 道德과 봉건적 社會經濟構造로서 補強되어져서 團結을 維持해 올 수 있었다.

(B)의 個人中心의 불안정한 家族은 工業化한 現代社會의 勤勞者家族이 그 代表的이다.

家産을 子女들 사이에서 分配함으로써 子女들은 父母와 他親族에 대한 義務와 責任에서 해방되는 반면에 職業的 실패로 生活保障을 잃을 경우 家族的 依存과 親族의 扶助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現代 資本主義 工業社會에서는 要 救護對象의 貧民家族이 續出하게 된다. 그리고 個人의 權利를 옹호하는 법률이 家族主義를 弱화시킴으로써 個人中心의 利權을 끝없이 延長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社會的 人間關係에 있어서 無秩序한 競爭을 자극하며 치열한 生存競爭의 야만적상태로 되돌아 간다고 Le play 는 경고하면서 個人主義的 家族은 家父長制 大家族의 장점을 어느정도 이에 조화시켜 工業社會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家族問題를

註3) Le play, "La Reform Sociale" Tours 1887, 7th ed, Vol. I Section on the Family, PP.380-519 것을 李効再 "家族과 社會" PP.20-22 에 引用記載된 것을 참고.

방지하며 是正해 나갈것을 강조한다.

(C)의 直系家族(the Stem family)는 現代社會經濟의 權力構造가 個人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階단을 한편으로 막으면서 安定된 農耕社會의 家族生活의 利點과 工業社會가 허용하는 個人의 自由와 自立性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家族形態를 말한다.

家族의 좋은 傳統은 本家を 통하여 維持되며 젊은 세대에게 傳達되고 친척에게 영향을 미쳐 人間紐帶의 토대가 된 本家は 위기에 相扶相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融通性있는 家族構造는 個人의 不安과 社會道德의 崩壞를 미연에 막고 安定된 社會秩序를 樹立한다고 Le play는 믿었다.

ㄷ 家族의 相互作用論

E. W, Burgess 에 의하면 (註4)

家族은 相互作用하는 人格들의 統一體라는 것이다.

家族成員들의 不和와 葛藤은 家族의 解體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成員들 間에 相互作用이 中斷될때 家族은 解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家族成員은 個個人의 役割이 무엇이며 變化하는 現代社會에 適應되는 役割을 해야한다고 본다.

現代의 社會經濟的 狀況은 家族的 統一을 저해하는 힘이 강하다.

家族을 團結시키는 힘의 弱化和 個人을 孤立된 單位로 個別化시키는 社會組織의 힘은 한 家族의 安定性和 求續性을 항상 위협한다.

家族成員의 團結과 持續은 단지 夫婦間, 父母 子女間의 人格的 紐帶에

註4) E. W, Burgess, the Family, New York : American Book, 1963.

依存한다. 이것은 人格間 相互作用을 항상 適應시켜 나가야 할것을 示唆한다. 家族으로서의 統一性을 지킨다는 것은 변화하는 社會的 狀況에 따라 家族內의 人格的 相互作用을 계속 適應시켜야 함을 말한다.

第二節 近代家族의 危機

離婚, 夫婦不和, 家出, 非行, 自殺等々の 社會問題의 原因을 보면 반드시 그 背後에는 家族關係의 問題性이 指摘된다.

그와 같이 現代人에게 있어서는 生活基盤으로서의 家族의 比重은 큰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特殊問題를 가지는 것은 모든 問題家族의 경우뿐만 아니다. 보통 問題性이 없다고 생각되는 一般家庭에 있어서도 現代에서는 家族이 항상 危機的狀況에 있게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社會의 近代化에 따라서 여러가지 社會集團이 分化發達되며 生産, 教育, 保健衛生, 娛樂, 宗教等の 諸機能이 家族外의 社會制度나 諸施設에 分化委讓되고 家族의 機能이 현저하게 縮小되기 때문에 個個人의 生活이 家族에 依存하는 領域이 적어지고 家族의 結合은 결국 愛情에만 依存하는 結果밖에 없게된다. 이와같은 家族의 變化는 「制度的家族에서 同伴者의家族으로 (from institutional family to Companionship family)」되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民主思想의 導入과 民法改正等에 따라 親子中心의 傳統的인 家父長制度에서 夫婦中心의 近代家族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여기서 夫婦中心의 近代家族이란 子女가 結婚과 同時에 獨立함으로써

家族의 原型이 「夫婦와 未婚의 子女로 構成되는 核家族 (nuclear family)」을 말한다. 따라서 近代家族은 一般的으로 그 形態나 機能도 縮小되고 「性欲의 充足」 「種의 保存」 「經濟的扶養」 「精神的安定」等 若干의 機能만이 남아 있다(機能의 縮小). 家族構成員들의 家族에 대한 依存性이 弱해지고 家族의 結合도 더 弱해졌다(依存性的의 低下). 그反面 家父長의 權限은 縮小되고 家庭內의 夫婦, 親子間의 人間關係가 民主化되고 個個人의 人格이 尊重되는 等의 長點도 있다(人間關係의 民主化).

傳統的인 家父長制度가 支配的이었던 우리나라는 急激한 家族의 近代化는 實現되지 않았으나 家庭內에 있어서는 新舊世帶의 對立에서 여러가지 家庭不和가 發生하고 老人問題, 夫婦不和, 靑少年問題等 여기서는 家族의 傳統型에서 近代型으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종종 家庭問題가 展開되었다.

그러나 그후 社會教育이나 메스컴의 影響으로 近代意識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家庭生活도 合理化되면서 近代化에 한걸음씩 다가갔다.

그러나 生活의 合理化 近代化는 家族內의 夫婦, 親子間의 人間關係도 合理的으로 무너져서 輕視하는 風潮가 생기고 있음에 대하여 一部에서는 近代家族의 危機를 念慮하고 있다. 물론 最近과 같은 機械文明의 發達과 大衆社會의 出現에 의해 社會的으로서는 「人間疎外의 時代」가 되며 大衆社會중에서 人間性回復을 위한 「休息所」로서의 家庭生活의 重要性이 再認識되고 消費文化의 充實에 따라 「새로운 家庭을 만드는」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스탄트 料理等에서 象徴되는 家事·育兒의 便利化가 家族의 人間關係輕視의 風潮와 연결되어서 마이홈 메이킹(my Home

makeing)은 物質文化에 充實한 것으로 기울어져 社會生活과의 연결을 잊어버리고 「社會로부터의 逃避의 場」으로서의 家庭의 意義만이 強調되게 된다.

그러므로 近代家族은 그 自體가 어떤 限界狀況에 直面해 있다고 할수 있으며 近代家庭 그 自體의 功過(merits and demerits)를 묻지 않으면 안될 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近代家族의 長點과 短點 卽 말하자면 近代家族의 功過를 檢討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家族의 經濟狀態나 人間關係의 分析에 重點을 두었던 見解로서는 不充分하고 社會가운데서 小集團으로서의 家族의 位置부터 생각해 보고져 한다.

家族은 全體社會중에서 한편으로는 社會構成上의 單位集團으로서의 여러 가지 社會的要請에 副應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生活의 基本集團으로서 家族들의 많은 生活要求에 副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社會的, 個人的要請에 應하기 위해서 近代家族은 말하자면 適切한 集團機能을 잘해 나가야 할 것이다.

近代家族의 特色을 機能性的의 縮小, 依存性的의 低下, 人間關係의 民主化의 面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點에서 생기는 近代家族의 功過에 대하여 다음에서 檢討해 본다

1) 機能性的의 縮小面에서 본 功過

近代家族의 機能的 縮小는 家族員의 役割分擔의 輕減이라는 利點이 있는 反面에 家族員의 生活의 共同場인 面이 그만큼 적어지며 그로인해 家族構成員相互間의 接觸度가 적어지고 連帶性이 弱化되는 缺點이 있다.

2) 依存性的 低下面에서 본 功過

家族의 機能性的 縮小로 인해 家族生活에 대한 依存性이 低下되면 사람들의 生活態度는 家族指向的이 아니고 오히려 社會指向的이 된다.

그것은 家族의 社會的開放性的 點에서는 좋은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家族固有의 機能이 歪曲化되고 만다.

말하자면 夫는 職場人으로서 忠實함으로 家族의 父親으로서의 役割을 잊게 되며 妻는 職場進出이나 團體活動에 參加하게 되면서 家族生活을 소홀히 생각하기 쉽다. 家庭教育等도 學校教育本位에 치우쳐서 學校의 成績에만 메달려 學習強化만 생각하고 家庭教育本來의 使命을 잊어 버리게 된다.

3) 家族의 民主化面에서 본 功過

家父長의 權威性低下로 인해 家庭內的 民主化가 됨에 따라 個人의 人格尊重이나 男女兩性間的 平等化的 成果는 높아지고 있는 反面에 家庭內的 統制力의 缺如, 子女들과 兩親과의 同一化(identification)의 對象의 喪失이라는 弊害가 생기며 子女들의 人格形成上的 缺陷이 생긴다.

이와같은 見解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家族의 傳統型에서 近代型으로 移行되는 段階에서 諸問題뿐만 아니고 近代家族의 實現段階에서 그 自體가 지니고 있는 缺陷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나라 家族은 二重의 危機的狀況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狀況중에서 家族은 더욱 具體的인 個個의 危機的事實에 直面하며 家族의 解體現象이 일어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家族의 外部社會 또는 家族內部에 어떠한 異變이 생기면

家族은 지금까지의 生活樣式에서는 이 새로운 事態에 適應할 수 없게 된다.

예를들면 外部社會에서는 戰爭이나 景氣變動 또 家族內部에서는 家族員의 出生, 疾病, 死亡이나 失業 其他 家族關係의 異變이 일어날 경우 이와같은 異變을 여기서는 危機的事實(crisis)이라 할 수 있다.

W. waller 와 R. Hill 은(註5)

家族의 危機的事實이라고 하는 것은 「家族이 가지는 여러가지 資力(resources)을 壓迫하고 지금까지의 生活習慣이나 또는 經驗의 힘으로는 解決되지 않기 때문에 그 解決을 위하여 家族이 새로운 生活樣式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되는 事實」에 있다고 한다.

우선 이 경우 注意할 것은 그와같은 危機的事實이 모든 家族에게 同一한 危機的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항상 同一한 結果를 생기게 한다고 定해져 있지 않다.

어떤 事實이 危機性을 發生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家族自體에 따라 관련된다고 하겠다.

R. Hill 은

어떤事實이 危機化하기까지의 過程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方式을 提示하고 있다.

A (事實: the event)

B (家族의 資力: the familys crisis-meeting resources)과의 相互

作用

註) W. Waller and R. Hill, The Family, revised edition, 1952.

C (家族員의 主觀的態度 : the definition the family makes of the event) 와의 相互作用

X (危機 : the crisis) 의 發生

이 方式에서 보면 B項과 C項은 오히려 家族自體에 있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事實의 危機性을 알기 위해서는 家族의 機能이나 價値意識等을 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어떤 事實이 危機化되는 條件으로서 Hill 은

(A) 事實의 困難度

(B) 家族의 資力狀況

(C) 家族員의 主觀的 態度等을 들고 있는데 注目할 수 있다.

어떤 形態의 事實은 그것을 各家庭이 받아들이는 方式에 따라서 危機化되며 家族의 解體 (disorganization) 的 誘因이라고도 생각된다.

第三章 家族集團의 病理

第三章 家族集團의 病理

集團의 病理란 人間의 集團을 單位로 하여 發生하는 病理現象인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어떤 하나의 家族集團과 職場集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集團은 人間을 中心으로 할 때, 가장 基本的이고 普遍的인 生活欲求인 性, 愛情, 職業의 充足을 實現하는 곳이며 人間은 항상 이와 같은 集團關係에 있다.

家族集團은 集團의 統一성이 確固한 組織集團이다.

具體적으로 問題가 되고 있는 家族集團의 病理로서는 離婚이나 家出, 缺損家族, 貧困家族, 老人世帶 등이 考慮된다. 離婚·家出은 家族集團의 病理의 結果現象이며, 缺損家族은 父母의 缺損으로부터 發生되는 問題이며, 疑似缺損 家族으로서 父母不在에 따른 Key Child의 留守家族이 있고 貧困家族은 貧困으로 인한 問題이며 老人世帶는 核家族化와 老令化에 따른 問題가 課題가 되고 있다.

또한 家族解體는 社會解體論으로부터 家族病理를 接近 (approach)시키고 있다.

(一) 家族이 健全하게 發展하기 위해서는,

第一은, 家族의 組織이나 機能이 圓滑하게 遂行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家族成員이 家族共同體를 維持하기 위한 共通된 目標을 認識하여 相互協力 扶助하고 調和的인 家族機能을 遂行해야 할 必要가 있다.

第二는, 夫婦 또는 兩親 등이 健在하며 社會의 平均的인 生活水準을 만

족하게할 住居나 經濟生活이 確保되어 있어야 하며,
第三은, 家族成員間의 地位, 役割이 矛盾衝突하지 않을 것이며,
第四는, 家族成員間의 生活目標나 關心이 一致해야 하는 등의 要件이 必要하다.

그러나 家族成員間의 價值觀이나 生活態도의 衝突, 理想이나 關心이 分化對立하고 緊張된 狀態가 되거나 家族이 生活共同體로서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여 家族이 家庭內에서 모두의 地位가 不安定, 不均衡해지면 家族의 共同體는 解體하게 된다.

(二) 家族葛藤의 要因

M. A. Elliott 와 F. E. Merrill 은 家族成員間에 葛藤이 생기는 原因으로서,

第一, 資本主義體制에 內在하는 社會構造上的 缺陷

第二, 急激한 社會變動, 産業化, 都市化 등에 의한 經濟的 條件, 文化樣式的 變化와 거기에 대한 各個人의 具體的인 家族의 變化, 適應 條件이 缺損되는 것.

第三, 家族成員의 人格, 行動樣式, 價值觀의 問題, 특히 家族成員間에 있어서 地位役割의 複合化나 期待에 벗어나 役割의 葛藤 등의 條件이 모두 있다.

○第二次大戰後 우리나라의 家族제도도 民主主義 思想의 普及, 民法改正 등으로 家父長的 家族主義의 傳統的 家族에서 夫婦中心의 近代的 核家族으로 移行하고 生活樣式的 合理化와 經濟生活의 困難에 있어서 이와같은 家族關係의 理念, 生活經驗에서는 解決되지

않는 문제가 累積되고 親子間에나 夫婦間에서도 對立, 老人問題等의 家族解體의 문제가 顯在化되고 있다.

第一節 家族解體 (family disorganization)

現代社會에서는 離婚, 家出, 自殺, 犯罪, 非行 等 많은 社會病理現象이 存在함으로 그 研究의 한 方法으로서 社會解體理論에 의한 問題分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反社會的인 行爲의 發生을 探究하기 위하여 社會組織 (Social organization) 의 混亂·崩壞로부터 解明되거나, 個人, 家族, 地域社會와 國家, 國際關係 等の 側面에서 그와 같은 問題를 分析하기도 한다.

家族解體에 관해서는 通常 家族集團은 基本的인 社會的 單位集團으로서 家族成員의 生活欲求를 만족시키고, 어떤 一定의 構造, 機能, 組織을 社會的으로 適應케 함에 있어서 家族集團이 社會變動이 激한 現代社會에 있어서 남아 있는 基本的인 機能으로서 社會에 適應하거나 逆으로 混亂·崩壞하거나 함에 따라 家族集團과 外社會와의 構造上 組織上의 關係에 대한 問題가 論해진다.

(一) 家族解體의 意義

M. A. Elliott 와 F. E. Merrill 는 「家族集團은 그 成員이 役割의 履行을 充分히 함에 있어서 集團의 統一性이 있는 경우에 家族組織化 (family organization) 가 行해진다」고 하였다.

이에 相對하는 家族解體는 家族의 集團化의 側面에서 보면, 「核家族에

서 보는 小集團의 弱化 (weakening), 崩壞 (breakdown), 分解 (dissolution) 가 있고 家族의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다」

要는 家族集團이 社會的 價值觀의 不統一, 役割의 不履行, 家族關係의 緊張 等에 의해 그의 集團의 統一性을 상실함으로써 家族解體가 理解된다.

E. F. Hunt 는 「解體家族은 家族成員間에 極度の 不一致 (discord) 가 있거나 家族單位 (family unit) 가 崩壞되고 있는 것을 있거나 離婚, 遺棄, 別居, 死亡 等과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다」

夫婦關係의 解體로서 離婚을 들수 있으며 家族解體의 代表的인 것이다.

또한 家族解體의 要因으로서 愛情의 缺如, 夫婦의 社會的·文化的 背景의 差異, 貧困이나 失業에 起因하는 經濟上의 緊張, 子の 養育, 教育에 關한 意見의 不一致, 疾病 等を 들수 있다. 家族에는 成員을 맺어주고 있는 中心的인 紐帶가 있으며 그 紐帶가 基礎가 되어 여러가지 個人的인 人間關係가 持續되는 것이다. 家族解體는 家族으로서 해야 할 社會的 機能이나 役割, 社會的 單位로서의 集團의 統一性이 崩壞한 것이다.

W. J. Good 는 家族解體를 廣義로 解釋하여 「家族集團은 諸種의 役割關係에서 成立되고 있다.

家族의 不安定性 (instability) 이 있는 家族解體는 家族成員이 그러한 役割責務를 遂行하는 것의 失敗로서 定義된다.

여기서 主된 것은 以下の 것이다.

- ① 庶出 (illegitimacy), 未婚母 (unmarried mother)
- ② 夫婦의 一方이 意志的으로 家族集團에서 離脱함에 따른 家族分解 다시 말하면,

廢棄 (annulment), 離婚 (divorce)

別居 (separation), 遺棄 (desertion) 等

③ empty-shell family

家族成員이 表面的으로는 接觸하고 있으나 相互에 愛情的인 援助를 주기 위한 役割義務履行을 缺한다. 이것은 家族構成上의 分解나 不安定性이 없이 家族單位는 根本的으로 解體된다.

④ 夫婦의 어느 쪽의 意圖함이 없이 一時的 또는 永久的 缺損

예를 들면 投獄, 洪水, 戰爭, 不況 等 外的인 變異에 의해 생기는 家族的 危機와 緊張

⑤ 家族成員의 精神的·肉體的 病理性

子女의 極度の 精神的인 遲滯 (retardation) 나 夫婦 또는 子女의 精神異常이나 不治의 身體狀態 等に 의하여 役割의 意圖함이 없이 不履行이 생기는 肉體的 危機

要컨데 家族集團은 그의 成員이 自己의 役割을 充分히 履行하고 集團的 統一이 行해짐으로서 社會集團으로서의 家族의 組織化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他 家族集團은 外的·內的 變異에 의하여 危機를 經驗하거나 家族이 그에 대하여 再組織化 (reorganization) 를 行하여 成功하고, 家族成員은 役割을 履行하며 家族의 諸機能에 障害를 만들어 集團的 統一性을 缺如하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家族集團은 成員을 위해서도 對外的으로도 종종 欲求나 要請을 만족케 하며 家族成員은 家族集團에 대하여 生活欲求를 期待하는 것으로부터 離脫하고 그의 많은 反社會的인 行爲의 傾向이 생긴다. 이와

같은 過程을 家族解體라 한다. 물론 家族解體는 家族集團에 따라 程度의 差는 있으나 死別, 離婚, 遺棄는 주로 夫婦關係의 高度의 解體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家族解體의 모두가 아니고 他に 親子關係를 포함하여 低度의 것도 存在한다.

또한 最近, 經濟의 發展과 함께 問題視되고 있는 맞벌이家族, 失業貧困家族, 孤老의 家族 等도 機能上의 解體家族의 一類型이다.

다음에 家族關係를 中心으로 分類하면,

① 離婚, 死亡 等은 다시 同一人과 人間關係를 回復할 수 없음을 意味함으로써 家族關係의 絶對的인 斷絶關係에 있고,

② 家出, 別居, 遺棄 等은 다시 同一人과 人間關係를 回復하는 것을 意味함으로써 一時的·相對的인 中斷家族 關係에 있다.

③ 未婚의 母子 心身障害者 家族 等은 不完全한 家族關係에 있다.

이와 같은 種類의 家族解體 現象은 모든 社會에 있어서 볼수 없는 것이며 社會가 近代化하고 機械文明이 合理的으로 進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解體現象은 아직도 社會的으로 合理的인 解決이 되지 않으며 個人의 問題, 個個의 家族의 問題로서 社會的으로 理解되고 있지 않다.

社會에는 未婚의 母子를 善導하고 精神薄弱兒을 가진 家族에 대해 援助코저 하는 慣習이 아니고 모든 問題를 가진 家族의 責任에 돌리고 있다. 따라서 家族解體現象의 分析은 다만, 離婚, 未婚母 世帶의 分析의 問題만이 아니고 家族解體를 가져오게 하는 社會의 構造, 時代思潮, 家族의 役割機能, 社會的 單位의 變化 等に 關聯하는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二) 家族解體의 要因

(1) 家族外的 社會의 變動性

現代資本主義 體制下的 産業化, 都市化, 大衆社會化의 過程에 있어서 失業, 貧困, 生産의 場과 消費의 場과의 分離, 夫婦의 家族外에서의 經濟的 活動과 그의 社會的 地位의 向上 等은 家族內的 夫의 役割遂行을 방해하고 있으며, 妻의 役割의 重複, 不滿에의 傾向을 가지고 있다.

흔히 地域的·階層的 移動性이 높고 大衆娛樂 施設의 發達 等은 家族 成員間의 價值觀의 統合性을 喪失하게 되고 家族員의 家族集團에의 依存度를 弱화시키고 있다. 또 社會的 風潮의 異常에 따라 家族內에 있어서 個人的 生活과 集團의 生活과의 不平衡도 無視할 수 없다.

(2) 家族集團 自體의 變異

家族構造의 面에서는 核家族의 成員의 缺損(缺損家族)이나 缺損補充에 따르는 問題. 多子家族, 老人家族도 경우에 따라 家族解體에의 경우가 있다.

家族의 機能面에서는 家族緊張(family tension), 役割葛藤, 價值體系의 混亂 等이 主된 것이다.

특히 家族이 緊張下에 있을 때, 家族解體나 諸種의 社會病理에의 傾向은 顯著하다. 家族關係에 있어서 緊張은 第一次的 緊張이 퍼스넬리티特質 다시 말하면 衝突하는 氣質, 價值觀의 不一致, 欲求不滿, 偏見, 個人的 愛情의 表現이나 性的 關係에 對한 反應, 精神病理學의 人格 等에서 生기고,

第二次的 緊張이 經濟的 不安定, 職業的 不安定性이나 不順應, 文化的

背景이나 社會的 地位의 差異, 疾病 등에서 生기고, 平靜한 바란스가 混亂한 狀態에 있다. 말하자면 家族成員相互의 緊迫下의 紛爭에 있다.

㉓ 家族解體 (family disorganization) 의 論理

I. 家族의 社會適應의 問題發生

社會適應 (social adjustment) 이라는 概念은 一般的으로 個人의 生活要求와 이것을 發見하기 爲해 社會制度 및 文化와의 사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狀態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滿足하기 爲한 合致」의 實現을 爲하여 家族도 一定한 形態, 構造下에서 組織化 (organization) 가 이루어진다. 既述한 바와 같이 家族이 危機的 事實에 直面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組織化에서는 機能遂行이 될수 없고 家族의 解體 (disorganization) 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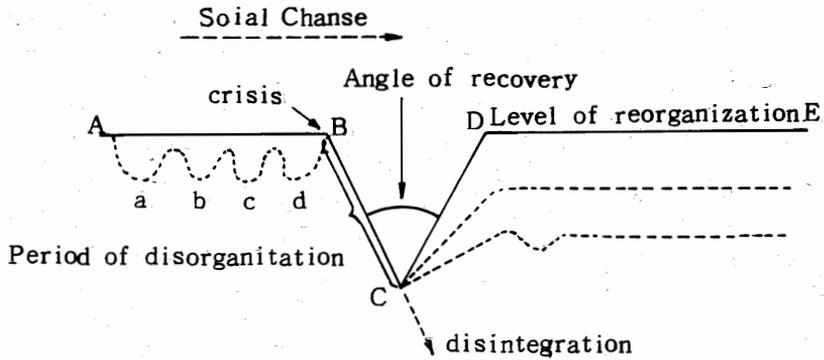
그러므로 家族의 機能不全의 結果 家庭不和, 非行, 自殺 등의 反社會的 行爲 (anti-social behavior) 나 社會的 逸脫 (social deviation) 이 생기고 결국은 離婚, 家出 등과 같은 家族崩壞 및 家族分裂 (family disintegration) 등의 破局的 結末이 초래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여기까지 이르기 前에 家族의 再組織化 (reorganization) 가 行해져서 이 破局을 면하게 된다. 거기서 家族自體의 社會適應을 그 集團組織面에서 본다면,

組織化 (organization)
||
非組織化 (disorganization)
||
再組織化 (reorganization)

의 圖式이 그려진다.

(圖 - 1) The course of adjustment



〈註〉 W.Waller and R.Hill, The Family

(圖 - 1) 에서 본다면, A→B의 方向이 家族의 組織化 (organization)에 의한 社會適應過程에 있고 B點에 있어서 危機的 事實에 直面하며 家族은 B→C의 方向으로 disorganize 된다. 그러나 家族은 스스로의 힘으로 C→D의 方向으로 回復하고 나중에 D→E의 水準까지 達하게 되고 새로운 社會適應의 狀態에 이른다고 한다. 이 圖式은 일단 公分母로서 示唆된다고 생각하나 더욱 理解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補充이 必要하다.

現代와 같은 變貌社會中에서 近代家族이 항상 본 바와 같은 危機的 狀況에 있는 것은 家族이 完全 organize 되고 있는 것은 많으며 오히려 항상 社會的 壓力에 의하여 disorganize 되며 그때마다 어떠한 方法에서 reorganize 되고 있으며 지극히 다이내믹한 狀態에서 社會適應을 計劃하는 것은 보통이다. 따라서 (圖 - 1)의 A→B의 方向은 사실은 단지 直線이 아니고 a, b, c, d의 波狀點線에서 지적되는 動的인 行動이라 생각된다.

그 曲線中에서 B點에서와 같은 危機가 생각외에 클 경우 家族은 C點까지 disorganize 되고, 그 C點에서 reorganization에 의한 回復에 失敗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社會的으로 容認될 수 없는 方法이나 手段에서 解決을 하려고 한다.

결국 그 極限狀況에 있어서 個人이나 家族의 不適應症狀으로서 非行, 自殺, 家出, 離婚 등의 社會的 逸脫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問題發生을 圖表에서 C→X方向으로 表示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家族의 organization과 disorganization은 一般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對立概念이라는 反對概念이 아니다. 오히려 家族의 organization은 그 disorganization과 reorganization과의 다이나믹한 均衡過程 및 辯證法的 統一過程에 의해 이루어 짐으로써 指向되는 目標的 家族狀況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2. 家族의 organization과 disorganization

그러면 家族의 organization과 disorganization이란 家族의 어떤 狀態를 意味하는가? social disorganization의 代表的 主張者인^(註6) M.A.Elliott와 F.E.Merrill에 의하면 家族의 構成要素간의 均衡調和下에서 家族의 機能이 充分히 行해질 수 있는 狀態를 organization이라 부르고 따라서 그 特徵으로서는,

(A) 目標의 一致 (unity of objectives)

(註6) M.A.Elliott and F.E.Merrill, Social Disorganization, 3ed, 1950, pp. 331-341

(B) 個人的 抱負의 一致 (unity of personal ambitions)

(C) 關心의 一致 (unity of interests)

等을 들수 있다.

그리고 disorganization 은 그 反對概念으로서 家族의 構成要素間의 不均衡 不調和下에 家族的 機能이 充分히 行해져 있지 않는 狀態로 規定되고 그 特徵으로서 價值體系의 混亂이나 役割의 重複, 不滿, 葛藤 등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어떤 家族의 構成要素間의 均衡調和가 이루어져 있어도 家族全體가 外部社會의 文化나 諸制度에 適合치 않을 경우에는 家族은 眞정으로 아주 잘 組織化되었다고 할수 없다. (家族의 社會適合性)

단, 社會에 適合하기 위해서나 기타의 理由에서 家族員間의 役割配分이나 人間關係에 無理가 있어서는 家族의 集團統合은 維持되지 않는다. (家族의 集團統合性)

그리고 마지막으로 家族의 社會適合性이나 集團統合性을 保持하기 위하여 家族員 個個人의 要求充足이 이루어질 때 家族員은 그 人格形成上의 支障이 없어지게 된다. (家族의 要求充足性) 거기서 家族의 organization, disorganization 過程을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家族의 構成要素로서의 價值體系나 役割 等の 相互關係을 더욱이 家族의 社會適合性, 集團統合性, 要求充足性의 三局面에서 考察코져 한다.

(A) 家族의 社會適合성과 社會生活

家族과 社會生活과의 主要한 接點은 무엇이래해도 우선은 職業生活과 團體參加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社會的 參與를 하는 家族가운데서는 夫의 就勞나 其他 社會的 參與와 妻의 家事勞動이라고 하는 分業體制가 一般的으로 行해지고 있다. 그러나 最近처럼 女性들이 社會進出을 함에 따라서 主婦의 就勞가 눈에 띄게 많아지면 家事와 育兒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家庭生活의 合理化에 따라서 家事勞動은 共同分擔이 된다고 하더라도 子女의 養育은 누구에 의하여 行해 질 것인가. 또한 保育所 其他 施設의 充實에 의해 일단 解決이 된다고 해도 幼兒期の 集團生活이 施設病 等の 弊害를 받게 되고 또 子女의 父母에 대한 依存에서 分離되는 過程이 單純化되기 때문에 父母와 同一化 (identification)를 통한 子女의 社會化過程 (socialization)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子女의 人格形成上 支障을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맞벌이家庭」이나 「母子家庭」의 問題點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母子家庭의 問題에서도 母親의 就勞로 因하여 經濟的인 面은 解決이 되어도 家事勞動이 子女에게만 맡겨진다면 子女는 本來는 「父 없는 家庭」이었지만 「母없는 家庭」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子女들은 더욱 本質的인 家庭的 條件을 상실하게 된다.

家族의 社會適合性を 保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맞는 社會制度의 確立이 必要하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 注目되고 있는 父母의 過度한 進學熱도 家庭의 父母들의 無理解를 말하기 前에 職場에 도사리고 있는 學歷偏重이 없어지지 않는 限 進學熱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家庭教育은 本來의 그 自體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現代는 中流階層의 價值體系나 文化가 支配的인 社會로서 進學이나 出世等 「成功」이 生活目標로서 相互의 競争을 통해 指向되고 있다.

그러므로 中流階層에서는 이와 같은 價值體系나 文化를 퍼스낼리티 (personality) 構造 가운데서 內面化시킨 育兒樣式이나 「訓戒」가 幼兒期의 性格上 嚴格히 行해지며 퍼스낼리티의 社會化가 達成된다.

그러나 下層社會에서는 이와 같은 幼兒期의 育兒樣式이나 訓戒가 充分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成長하는 靑少年들은 더욱 높은 中流階層의 社會文化 가운데서 競争에 成功할 機會가 적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的 成功의 機會의 缺如」에서 오는 地位的 不滿 (status frustration) 및 그에 대한 反應形成 (reaction formation) 에서 下層靑少年들은 反社會的 價值體系를 추구하여 非行文化를 만들어낸다고 Cohen 은 말하고 있다. (註7)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子女訓戒까지도 家族의 社會適應性的 視點에서 充分히 檢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要컨데 家族의 社會適合性的 缺如의 原因이 社會側에 있는가 家族側에 있는가를 區別로서도 그 社會適合성을 無視한 家族의 organization 이나 disorganization 은 論할 수 없다.

(B) 家族의 集團統合성과 人間關係

그러나 또 이와 같은 社會適合의 困難에 對해서는 家族内部의

(註7) A.K.Cohen, Delinquent Boys-the Culture of the Gang, 1961.

人間關係의 結束力, 결국 家族의 集團統合을 함에 따라 對處해서 이기고 가는데 家族生活의 存在理由가 있다.

이와 같은 視點에서 家族의 集團結合성과 社會適合性과의 관련을 考察한 것은 Cavan과 Koos와 Hill 等の 研究가 있다. (註8)

Cavan은 經濟的 不況이 家族에게 주는 영향과 거기 대한 家族의 適合狀況에 대해서 研究하고 統合성이 큰 家族일수록 不況이라고 하는 社會變化에 잘 適合, 克服하고 統合성이 적은 家族은 破局에 빠지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또 Koos는 低所得階層의 家庭의 問題, Hill은 第二次 世界大戰으로 생긴 遺家族의 社會適應問題에 대해 研究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이나 家族의 統合성이 큰 點일수록 危機를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고 보면 家族의 統合성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機能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重要한 課題이며 家族研究의 거의 大部分이 여기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도 當然하다.

家族의 集團統合성의 缺如 形態로서는 家族의 葛藤 (conflict), 緊張 (tension)을 들수 있다.

이것은 夫婦間 또는 親子間的 人間關係의 不調整에서 생기는 現象으로 變動에 이기지 못한 社會에서 家族은 항상 organize 되어 있다는 것을

(註8) R.Cavan and K.Ranck, The Family and the Depression, 1938.
E.L.Koos, Families in Trouble, 1946.
R.Hill, Familles under Stress, 1946.

定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그 結果的 現象으로서 여러가지 葛藤, 緊張狀態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異常한 狀態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비
온뒤 땅이 굳어지는 式的 集團統合性이 높아진다는 것은 正常機能이 되
는 것이나 간혹 解決을 失敗하여 家庭破鏡의 誘因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그와 같은 家庭生活의 여러가지 局面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E. W. Burgess 와 H. J. Locke 는 그 種類를, (註 9)

- 1) 感情的 對立
- 2) 文化型的 對立
- 3) 社會的 役割의 對立
- 4) 經濟的 緊張
- 5) 情緒的, 性的 葛藤 等を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葛藤, 緊張의 發生過程도 家族內의 人間關係의 次元
에서 整理하는 家族員간의 價值體系, 役割行動에 따라 이루어지는 相互作
用的 不調整으로 취급된다.

특히 家族員간의 直接的인 行動으로서는 役割行動이 주로 되고 價值體
系는 이것을 正當化해서 動機가 되는 性質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役割行
動의 不調整이라는 것을 中心으로 말해두자.

사람은 自己의 地位에 따라 役割行動을 통해서 相對 및 集團을 움직
이게 되고 相對 및 集團도 그 役割行動을 期待한다. 이와 같은 「役

(註 9) E. W. Burgess and H. J. Locke, op. cit. pp. 563-574.

割・期待의 相互作用」이 集團가운데서 人間關係를 形成한다. 말하자면 夫는 家庭의 「일하는 손」 및 「父親」으로서의 役割을 하며 妻子는 그의 이것을 夫에 期待하며, 妻는 「家事擔當者」 및 「母親」으로서의 役割을 하며 夫와 子女는 이 役割을 妻에 期待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役割은 家族의 機能全體에 對應하고 그와 같은 役割과 役割과를 相補하여 家族의 機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夫婦, 親子間에 「役割의 補足性 (Complementarity of roles) 이 重要的 意味를 가지며 또 家族의 集團統合도 維持되었다. 그러나 家族內的 役割行動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社會的·文化的으로 規定된 行動樣式이 있으나 社會變化가 심할 때는 役割行動 樣式도 變化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側에서도 그러한 價值意識이 形成되고 相互의 役割, 期待關係에 變化가 생긴다.

男子가 家事を 도우는데 對하여 「夫婦關係의 民主化」라는 立場에서의 贊成論, 「男性의 女性化」라는 立場에서의 反對論은 그 例이다. 家族員間的 役割, 期待關係의 이와 같은 價值體系的인 心理的인 말하자면 夫婦間的 心理的 要求로서 相對方에 대하여 夫 또는 妻로서의 期待外에 「慈愛로운 父母로서 父母代理로서」 「理想의 父母 父母代理로서」 「永遠의 戀人으로서」 여러가지 타입을 期待하기 때문에 相互의 役割, 期待關係의 變化가 생긴다는 것을 들수 있다.

M. A. Elliott 는 主婦의 社會進出에 의하여 그녀들은 家族과 社會와의 사이에서,

- 1) 役割의 重複
- 2) 役割에 대한 不滿

3) 役割의 對立 等の 困難한 事態에 直面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한다.

(C) 家族의 要求充足性和 個人生活

家族은 社會適合性이나 集團統合性을 保持하는데 의하여 同時に 家族員 個個人的 快適한 生活의 場所로서의 要求를 充足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시 父母로서 社會的 面目을 維持하기 위해서나 夫婦間的 葛藤을 피하기 위해, 子女에 대한 愛情下에서 不當한 教育熱에 취했다가, 家計維持를 위하여 「맞벌이」를 함으로써 子女가 放任되고 子女에 의한 非難에 따라 父母로서의 立場이 防衛되고저 한다면 子女는 家族의 社會適合性이나 集團統合性때문에 scapegoat 결국 「몸을 대신하여 (scapegoat) 사람의 罪를 짊어지고 荒野에 쫓겨난 양과 같다」 scapegoat 의 위에는 集團이 統合되고 集團機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家族은 「逆機能 (dysfunction) 속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다. (註10)

그러나 家族의 organization 은 個人的 生活要求를 充足하고 個人的 生活의 場所로서의 正機能을 베푸는 것이 제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社會適合性이나 集團統合性이 保持되어 있어도 家族은 disorganization 되어 있다.

四 家族解體 (family disorganization) 의 諸形態

(1) 家族解體 (family disorganization) 와 再組織化 (reorganization) 의

(註10) E.F.Vosel and N.W.Bell,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as the Family scapegoat.

다이나믹한 均衡過程이 維持되지 않는다면 그 結果的 徵候로서 夫婦緊張, 葛藤, 離婚, 子女의 情緒障害, 家出, 非行 等 여러가지의 反社會的 行為나 社會的 逸脫現象이 일어난다. 물론 그러한 것은 家族的 原因으로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個個의 現象의 全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여기서는 家族的 背景에 관련된 事項에 대해서 夫婦關係와 親子關係에 대해 檢討코져 한다.

(2) 夫婦關係의 社會病理

M.A. Elliott 에 의하면 家族緊張 (family tension) 이라고 하는 것은 家族員 相互間 특히 夫婦間에 對立的인 態度를 發生케 하는 葛藤狀況을 意味하고 그와 같은 葛藤중에서 특히 解決困難하게 繼續하는 경우를 緊張이라고 하여 葛藤과 區別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對立不和의 狀態에는 變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 原因에 대해서는 人格的 要因과 社會的 要因으로 大別되나 Elliott 에 의하면 人格的인 要因으로 感情의 衝突, 人生觀, 行為慣習의 相違, 性的 不一致, 人格異常 等を 들고 있으며 社會的 要因으로서 經濟的, 職業的, 文化的 差異나 地位·年令의 相違·疾病, 親子關係, 尊屬과의 義理關係 等を 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要因은 當事者間的 對立的 動機로서 最初에 말한 바와 같이 必然코 진정한 原因이 아니며 단지, 그것은 誘因에 있고 진정한 原因은 별도로 內在하고 있는 것이 많다.

또 단일 原因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原因이 複合되어서 因果의 連鎖反應에 의하여 複雜化되는 등 그 實體는 더더욱 把握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그 解決이 困難할 때는 離婚이라는 形態로서 終結한다. 社會의 近代化에 따라서 離婚率은 上昇되고 있는 것이 世界各國의 趨勢이다. 離婚決定에 대해서는 法律的, 社會的, 宗教的인 諸制度의 規制가 있으며 各國 事情에 따라서 그 上昇傾向에도 差異가 보인다.

특히 現代는 前近代的인 逐出離婚과 核家族의 脆弱性에 따른 近代的離婚이 混在되고 있으며 離婚率도 急激히 上昇되는 傾向을 가진 複雜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아도 農村도 離婚率이 比較的 높아지고 있으며 都市의 上昇率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離婚의 社會的 背景에 있어서 前近代性和 近代性的의 二重構造를 反映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最近에 協議離婚實態에서는 核家族中の 夫 역시 妻의 問題나 經濟問題에 起因하는 것이 많고 또 대부분 妻의 同意를 얻는 등 離婚에 대한 個人的 近代의 人權意識을 보여 준다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3) 親子關係의 社會病理

親子間의 人間關係가 子女의 人格形成上 미치는 影響은 크다.

P. 사이몬즈는 親子關係를 規定하는 基本的 要因으로서 父母의 態度에 대하여 다음 二要因을 들고 있다.

(A) 受容 - 拒否의 要因 (子女에게 愛情을 주던가 拒否하던가)

(B) 支配 - 服從의 要因 (子女를 自身の 生覺으로 支配하는가 子女의 要求에 服從하는가)

父母에게 受容되어 있는 子女는 情緒적으로 安定되고 매우 社會化되어 있고 온순하며 熱心이며 칭찬할 수 있는 性質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反

하여 愛情이 拒否된 子女는 情緒不安定, 社會에 대하여 反抗的이며 冷談하며 無關心하다.

支配的 父母의 子女는 子女의 要求에 服從하는 父母의 子女에 비하여 社會化되어 있고 人間으로서 承認된 行動이 많다.

그들의 行動에는 하루 生活의 訓戒가 나타나 있고 學校의 學業에 흥미를 가지며 좋은 態度를 가지고 있다. 反面 그들은 敏感, 自己意識的, 服從的이며 退嬰的으로 自己를 相對에게 表現하지 않으며 또 그들은 自身이 그 가운데서 養育되고 있는 集團의 習慣에 따라 容易하게 服從한다.

이에 대해 服從的 父母의 子女는 順從도 않고 責任感도 없다. 學校에서는 亂暴한 面이 있으며 規則바른 習慣을 못가지고 怠慢한 反面 積極的이며 自身을 相對에게 有效하게 表現하며 또 權威에 反抗한다. 그리고 보면 家庭에서는 父母에게 受容的, 支配的인 態度가 必要한 것이나 父와 母의 役割이 分擔된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父母가 同時에 行해질 경우도 있다.

그러나 子女의 教育이나 家庭教育은 오로지 母의 獨占的인 役割로 생각하는 것도 妥當하지 않다. 父도 또한 子女들에 대한 重要的 人間關係의 對象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非行少年중에서 母親의 愛情도 必要하지만 父親의 權威나 愛情도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靑少年의 非行化의 原因으로서 父의 威壓的인 態度에 대한 反抗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 非行少年 家庭에서는 少年들이 하루 生活日課에서 父의 權威를 느끼지 못하고 또 父의 愛情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一般少年의 경우보다 強한 편이다.

第二節 家族集團病理의 具體的 現象

(一) 離婚 (divorce)

(1) 離婚의 意義

家族은 社會의 制度的인 單位集團에 있으며 어떤 一定의 形態, 構造, 機能, 組織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外社會 또는 家族內에 있어서 어떠한 變異를 생기는 경우 家族은 其의 變異에 對하여 適應을 한다.

그러나 그에 失敗하고 家族의 機能에 障害가 생기면 家族成員은 自己의 生活欲求의 充足을 家族에 期待할 수 없거나 家族으로부터 離脫할 方法으로서 離婚, 遺棄, 別居等의 家族解體現象이 있다.

특히 離婚은 夫婦의 어느편의 死亡이 絕對的인 家族解體의 理由가 되나 家族內에서의 主된 夫婦關係解體의 一形態이다. 또한 現實에는 內緣關係, 遺棄, 別居도 事實上的 離婚과 모두 差가 없다.

離婚은 婚姻과의 關聯으로 成立한 概念이나 離婚에 대한 사고방식은 社會에서나 時代에 따라 다르다. 바꿔말하면 카톨릭教가 支配的인 社會(스페인, 브라질等)에서는 離婚은 許可되지 않으며 또한 극도로 排斥된다.

日本의 경우 三從七去의 昔에서 第2次 世界大戰直後에 妻의 離婚條件은 현저히 制限되었고 夫의 優位를 認定한 離婚이 一般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民法改正後 離婚의 條件은 平等하게 되고 婚姻의 解消도 自由로 워졌으며 특히 最近에는 離婚의 積極性을 主張하고 있다. 前近代의 離婚이 支配的인 社會에서는 婚姻은 個人相互의 것이 아니고

가와 家와의 集團的 結合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離婚은 純粹한 夫婦間의 原因에 있다가 보다 姑婦間의 問題나 家意識的 理由에 따라 夫側이 一方的으로 逐出하는 경향의 離婚이었다.

그러나 最近의 都市에서는 産業化, 都市化等 그의 社會的 基盤으로서 核 家族化가 되고 家族員의 個人的인 生活이 尊重됨으로써 家族集團의 統一 性이 要望되고 있다.

同時에 婚姻이란 自體는 父母가 決定하여 結婚하므로 個人的 意志에 따른 結婚이 容易하지 않았다. 특히 都市家族은 職業, 階層, 價値觀, 個人的 背景等 多樣性을 가지고 結婚後의 夫婦의 接觸은 生産의 場과 消費의 場의 分離, 家族外에서의 娛樂施設의 擴充, 社交의 場의 分離等에 따라 減少하는 바가 一般的이다.

이와같은 것은 특히 都市家族에서는 近代家族의 崩壞이유로 近代的 離婚이 多發할 可能性이 많다.

家族解體研究에 人間生態學的 接近을 試圖한 E.W. Mowrer는 특히 離婚, 遺棄를 都市化 傾向과 관련하여 家族集團이 完全히 解體되는 것을 家族 分解 (family disintegration)라 한다.

離婚은 法律的으로도 社會的으로도 夫婦로서 認定되고 있는 生活共同體의 持續을 夫婦가 精神的 葛藤이나 結婚觀等の 變化로 인해 無價値하다고 생각한 結果 離婚하는 것을 社會에 宣言하는 行爲이다.

더욱 離婚은 夫婦兩人的 私的인 人間關係의 破局을 意味하는 것만이 아니고 同時에 國民共同體의 問題로서 國民社會의 慣習·道德에 깊이 關聯을 가지고 있다.

(2) 離婚에 대한 見解

離婚에 대한 見解에는 4가지의 立場이 있다.

第一은 「結婚은 神이 合해준것이므로 人間이 나눌수 없다」 離婚을 絶對 認定하지 않는 基督敎的 婚姻非解消主義

第二는 「離婚은 效果가 없는 結婚의 不幸한 副産物인 것으로 回避하기가 어려운 必要惡이다」 離婚必要惡論의 立場에서 特定の 原因에 대한 離婚을 認定하는 有責離婚主義

第三은 「離婚은 明白히 善이 아니고 現在 破綻되고 있는 結婚生活을 救濟하는 手段이다」 救濟離婚主義

第四는 「結婚은 民事契約의 一種으로서 그의 解消도 自由로운 것으로서 離婚原因이 有責에 있거나 無責에 있는 關係가 合해진 것이 떨어져지는 것이다」 破綻離婚主義 立場이 있다.

어느 立場을 취하건 結婚의 目的, 社會秩序의 維持面에서 본다면 離婚은 좋지않은 必要惡이며 平穩한 家庭生活을 混亂케하고 社會의 安定을 崩壞하는 人間의 不適應行動이다.

現在 近代國家의 離婚法制中에서 婚姻非解消主義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는 거의 없으며 離婚은 宗教上의 罪에 있으므로 離婚을 認定치 않는 國家는 카톨릭敎의 影響이 강한 스페인, 알제친, 브라질等 數個國 밖에 없다.

한편으로 宗教上의 制約이 없는 소비엘연방은 離婚은 個人的 自由에 따라 容易하게 行할수 있고 프랑스, 美國等 近代國家는 離婚·別居의 制度를 採用하고 有責主義的 裁判 離婚制의 立場을 취한다. 日本에 있어서도

古代로부터 無因離婚이 行해져 왔고 法律時代에는 「七去·義絶」의 原因에 따라 夫의 마음에 따라 離婚하는 有因離婚主義의 立場을 취했다. 明治時代에는 舊民法의 制定에 따라 有責離婚主義 立場을 취했고 第二次大戰後에 夫婦對等의 婚姻의 民事契約의 解除, 破綻主義的인 思考가 강하여 離婚은 罪에서 惡德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家族制度의 面에 보아도 家父長的 家族이나 一夫多妻的 家族이 많은 國家에서는 夫側의 離婚은 容易하며 妻로부터 離婚申請은 어렵다.

그것에 對하여 個人主義나 近代化의 進行에 따라 一夫一妻制의 家族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女性側으로부터 離婚申請도 自由이다.

따라서 離婚에 對한 態度는 時代, 地域社會의 慣習, 宗教等の 相違에 따라 그 立場은 千差萬別이다. 世界第一로 離婚率이 높은 美國의 國民에서는 離婚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다.

(3) 離婚率

一般에 離婚은 各國 여러가지 離婚法에 의해 承認되는 離婚의 行政統計와 그에 비율로 나타난 離婚率에 의한 比較論議되는 것은 많다. 그러나 離婚에 關한 法律은 各國의 文化·慣習에 따라 적지않게 다르다. 離婚의 實數에 있어서도 離婚의 實態를 比較하는 것은 非科學的인 것이며 相對的인 概觀을 하는 것은 有益한 것이다.

歐美에 있어서 近代國家에서는 産業의 機械化, 人口의 都市集中, 社會의 近代化가 進行됨에 따라 家族의 形態도 家父長的 家族으로부터 夫婦와 未婚의 子女에서 男女對等의 個人主義的 核家族으로 移行하고 離婚率도 社會의

近代化에 比例하여 높아진다.

美國에서는 1930年 人口 1,000人에 對한 1.59의 離婚率에 있고 1960년에는 2.18로 約 1.3倍 增加하고

英國에서는 1930年 離婚率이 人口 1,000人에 0.09이고 1962년에는 0.61로 約 7倍 增加하고 있다.

社會保障制度가 進行되고 있는

스웨덴은 1930年 0.36 , 1962年 1.17로 約 3倍 增加

社會主義國家 소련은 1956年 人口 1,000人에 0.7 , 1958年 1.1 1960年 1.3으로 上昇傾向을 보여준다.

체코슬로바카아는 1930年 人口 1,000人에 0.40 1960년에는 1.12로 約 3倍로 增加하고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近代化에 따라 離婚率이 높고 같은 유럽에 있어서도 資本主義國家에서 보다 社會主義國家의편이 離婚率의 上昇率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社會主義國家의 경우에는 妻의 勞動이나 社會的 活動이 男女對等하게 行하여 집으로 妻의 自由意志에 의하여 自身の 態度를 決定함으로 離婚이 많은 경향이다.

(4) 離婚原因

本來 家族의 葛藤은 家族成員이 人間으로서 亦裸裸한 生活을 할때 생기는 問題로서 相對方의 氣分을 理解함에 있어 感情的으로 理解하지

아니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葛藤은 人間의 마음에 相反하는 欲望이 생기는 경우에 그에 對하여 對處하는 것이 欲望과 抑壓과의 間에 있어서 精神的인 鬭爭이다.

結婚生活에서는 夫婦는 身體的으로도 精神的으로도 一體인것을 要求하기 때문에 夫의 妻에 대한 要求도 愛人임과 同時에 主婦·母·家庭의 管理者일것을 要求하고 要求가 多様な 矛盾이 많기 때문에 要求가 充足되는 不滿의 度가 强하다.

夫婦에게는 圓滿한 夫婦에 있어서도 전혀 분쟁이 없는 夫婦라는것도 있을 수 없다.

圓滿한 夫婦라는 것은 분쟁이 발생하여도 相互 相對를 理解하여 緊張을 줄여 適應力있는 夫婦와 같은 것이있고 葛藤夫婦란 最初 바깥 壓力에서 緊張이 발생하여 次第에 夫婦의 內面으로부터의 不滿이 겹쳐 對立·偏見等 여러가지 感情이 생기고 결국 適意, 生理的 嫌惡感에 이르러 解決할 수 없는 분쟁까지 深刻화된 夫婦의 경우가 있다. 夫婦間 어떻게 뒤틀리는 것과 不和葛藤이 그대로 離婚의 原因이라고 할 수 없다. 家族의 人間關係는 단지 夫婦의 人間關係만이 아니고 同一家族內에 所屬하고 있는 子女와의 關係 社會의 文化的樣式, 社會思潮에 따라 拘束된다.

이 點에 關하여 E, Kreuger 은 離婚에 도달한 夫婦關係의 過程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1. 離婚까지 도달하기에는 夫婦의 共通의 目標가 消滅되고 各 個人의 生活目的이 家族의 共通目的보다 優先한다.
2. 夫婦의 協力扶助의 努力이 최소한 없다.

近代化에 比例하여 높아진다.

美國에서는 1930年 人口 1,000人에 對한 1.59의 離婚率에 있고 1960년에는 2.18로 約 1.3倍 增加하고

英國에서는 1930年 離婚率이 人口 1,000人에 0.09이고 1962년에는 0.61로 約 7倍 增加하고 있다.

社會保障制度가 進行되고 있는

스웨덴은 1930年 0.36 , 1962年 1.17로 約 3倍 增加

社會主義國家 소련은 1956年 人口 1,000人에 0.7 , 1958年 1.1 1960年 1.3으로 上昇傾向을 보여준다.

체코슬로바카아는 1930年 人口 1,000人에 0.40 1960년에는 1.12로 約 3倍로 增加하고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近代化에 따라 離婚率이 높고 같은 유럽에 있어서도 資本主義國家에서 보다 社會主義國家의편이 離婚率의 上昇率이 높은 傾向을 보여준다.

社會主義國家의 경우에는 妻의 勞動이나 社會的 活動이 男女對等하게 行하여 妻의 自由意志에 의하여 自身の 態度를 決定함으로 離婚이 많은 傾向이다.

(4) 離婚原因

本來 家族의 葛藤은 家族成員이 人間으로서 亦裸裸한 生活을 할때 생기는 問題로서 相對方의 氣分을 理解함에 있어 感情的으로 理解하지

族의 8.7%는 母子家族이다.

美國의 國勢調査標本調査局에 의하면 1953年 既婚者の 約 15%는 死亡, 別居, 離婚, 遺棄等の 原因으로 欠損家族을 形成한다.

(4) 留守家族

家族構成上 父 또는 母를 欠한 家族이 欠損家庭에 있다고 한다면 留守家族은 家族構成上에서 欠損함으로써 家族機能上으로 어떤 障害을 지니는 疑似欠損家庭에 있다.

(가) 父親不在의 留守家族

産業化가 進展하고 世帶主가 家庭에서 職場에 勤務하며 第二次, 三次 産業에 就勞하는 家庭이 增加하고 있다. 또한 三交代制로 勤務形態도 增加하고 있다. 都市化에 의해 通勤距離가 延長되고 통근 時間도 길어진다.

이와 같은 就勞狀況의 變化는 父親의 家庭不在를 日常化하고 그 結果 父親의 役割不在의 留守家族이 있다.

또한 父親不在의 留守家族은 都市의 自營業者나 農村의 農業經營者에게도 있다.

自營業者에 있어서도 最近 商店이나 工場이 家族의 居住와 分離되어 있고 郊外地에 居住하는 家族과의 接觸은 不規則的일 뿐이다.

農業에 있어서도 兼業農家數가 全農家戶數에 占하는 比率이 7割 以上인 現狀은 世帶主人 夫가 셀러리맨化함에 따라 父親의 役割不在하는 家庭이 많고 더욱 農家の 就勞形態의 特徵에서 季節的으로 出稼하여 農業의 現在收入을 必要로 하는 消費構造의 變化가 增加하고 있다.

出稼로 인하여 長期間 父親不在의 留守家族은 家族機能上的 障害를 일으킨다. 말하자면 長期出稼되어 消息만 기다리는 留守家族은 窮乏化하고 夫出稼中 妻의 不貞이 있을때 妻와 夫의 兩親의 不和가 激化되며 父에 의한 子에의 監督不在나 子의 父에의 同一化等 子女의 家出事件等이 일어난다.

都市에 있어서는 農村보다 父親의 役割不在로부터 家族內的 葛藤은 慢性化한다.

都市化的 過程에 있는 地域의 家族生活은 地方的인 規範과 都會的인 規範이 混在하며 아노미의 狀況에 處하고 이와같은 規範의 複雜性이나 曖昧性은 夫와 妻에게 各各 內在하는 家族規範을 混亂케 하고 對立 葛藤의 狀況을 일으킨다.

父親의 家族的 役割은 단지 月給의 運搬的 役割 以外에는 重視하지 않게 된다. 一般的으로 아들은 (男子아이) 父親에게 同一化 欲求를 가지고 있으며 對話를 통해 接觸의 機會가 적은 父子 關係의 이유로 同一化의 欲求에서 男子아이의 女性化를 助成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들의 家族外에서의 社會的 成熟을 현저히 지체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나) 母親不在의 留守家族

死亡, 離婚, 別居等에 따라 父親을 欠한 母子家庭에서는 母의 就勞에 의하여 家族的 機能에 障害를 받는 留守家族이 있다.

母子家庭의 問題는 단지 貧困化라는 病理性뿐만 아니고 母의 就勞形態로부터 留守에서 母와 子의 人間關係, 말하자면 母의 再婚 때문에 子와 子의 葛藤이나 子의 母에의 役割 期待의 不滿이나 母의 子의 結婚에 對

한 老後扶養에의 期待에서의 葛藤等に 問題가 있다.

(대) 맞벌이 夫婦에의 留守家族

都市家族 가운데 母親의 役割不在라는 것은 留守家族의 病理性으로 맞벌이 家族의 內面에 먼저 集中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맞벌이 家族은 日本의 경우 家全家族數의 12%程度로서 歐美의 20 ~ 30 % 에 比하여 낮으나 女子雇傭者 總數에 占하는 有配偶女子는 1955년에는 21 %, 1960年 25 %, 1960年 30 %로 確實히 上昇하고 職場에 있어서도 有配偶女子의 問題가 重要時되고 있다.

또한 女性의 結婚에서의 死亡까지의 家族周期의 變化에서 본다면 1930 年에 比하여 30年後의 1960년에는 子女를 出産하는 마지막 時期가 12 年에서 5 ~ 6 年으로 半減하고 또 壽命의 近長에 따른 家庭의 夫婦가 育 兒를 끝내는 中年期가 현저하게 延長되고 있다.

이와같이 家庭의 夫婦가 職業 그외에 社會的 活動에 時間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됨에 맞벌이 家族의 增加하는 原因이 되며 맞벌이 家庭에 혼란한 母親의 家庭外에서의 就勞나 社會活動 그 自體는 家族의 病理 是 아니다.

主婦의 就勞는 단지 收入에 의하여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家庭外에서 習得하는 知識이나 人間關係技術이나 職業的 地位에 따 른 權利나 利益에서 家族生活을 充實케 한다.

또한 能力實現의 充實感이나 滿足感은 本人의 精神的 安定에 役立하는 것일뿐 아니고 家族의 和合에 貢獻하는 것이다.

主婦의 雇傭이 家事의 遂行을 不完全 하게하며 家族 리크리에션의 機

會를 減少시키고 움직이는 主婦가 맞벌이에 대한 一般家庭婦人の 非難을 意識하며 夫의 내조와 子女 養育에 대한 罪惡感을 가지고 있으며 家族 病理의 原因이 되는것이 事實이다.

여기서 母와 子의 人間關係에는 情緒的인 機能이 重要視되며 母와 子의 접촉은 生活을 共同으로 하는 情緒的 結合에서 보면 子女는 母親의 就勞에 의해 留守家族으로서 機能的인 障害를 招來하고 있다. 留守家族의 子의 問題點은 거기에 있다.

日本 新産業都市의 調査에서는 小·中學校生徒에서 保護되는 問題生徒는 子가 問題生徒全數의 70%이다. 勿論 團地家族에 따라 地域的 連帶性이 欠如되어 있거나 母親의 職場이 長時間 勞動에서 厚生施設이 不備하거나 低賃金인 企業體制의 勞動條件이 留守家族의 病理를 불러 일으키는 重要 要因에 될수 밖에 없다.

또한 留守家族의 子女의 母親의 機能을 代行하는 乳兒保育所, 學童의 放課後의 保育機關等 社會福祉制度의 不備가 留守家族의 病理性을 顯在化 하는 것은 否定될 수 없다.

四) 貧困家族

(1) 家族은 生計를 함께 하는 生活의 共同體에 있으므로 家族生活의 基低에는 生産과 消費의 經濟的 構造가 支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家庭은 收入과 支出로 經濟的 機能을 하고 있다.

貧困家族은 이와같은 經濟的 機能이 阻害되는 狀況에 있는 家庭에서 收入과 支出의 兩者가 絶對的이거나 相對的으로 不足하여 生計의 規模가 현저히 縮小되는 家族이 있다.

家族周期의 研究에는 Rowntree, B.S의 家族經濟周期 (family economic cycle)說 以來 婚姻後의 貧困化의 時期에 對해 測定되고 있다.

Glick, p.c는 그의 代表的 研究에 있어서 그것에 의하면 第二期 즉 長男이 태어나 勞動年令에 達할때까지의 期間은 非勞動人口增加의 時期에 있고 이 時期는 家族의 生活水準이 低下하고 貧困家族이 된다.

第四期 즉 老夫婦만으로 配偶者 死亡後의 一人만의 時期는 收入의 減少까지도 杜絶됨에 따라 經濟的으로 不安한 時期가 된다.

日本에 있어서도 戰後의 核家族化에 의해 子を 養育하는 夫婦의 同居扶養이 期待가 없어짐에 이 第四期의 貧困化가 顯在하고 있다.

그러나 第四期의 貧困化에 관하여는 戰前으로부터 「貧乏人의 子は 많다」 「總額의 15는 貧乏의 峠」 등의 말도 表現되고 있다.

(2) 絶對的 貧困家族

一般的으로 社會機構의 複雜化에 따라 家族의 貧困化 要因은 多樣하게 있으며 社會生活의 水準上昇에 따라 家族의 貧困의 意味도 變化되고 있다.

그러나 社會體制의 時代의 變化를 초월하여 普遍的인 貧困家族의 類型을 여기서는 絶對的 貧困家族이라고 한다.

결국 家族生活의 營爲에 必要한 最低限度의 收入과 消費가 만족스럽지 못한 家庭에서는 具體的으로는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받고있는 極貧家族이 있다.

이와같은 極貧家族은 主로 다음과 같은 家族構造의 類型과 結付하여 顯在化한다.

(3) 病人世帶

世帶主가 身體的·精神的 疾患을 얻어 回復을 기다리는 中으로서 다른 生産的 機能을 營爲하는 家族員이 없는 世帶이다.

生活保護世帶중에서 最上位를 占하고 있다. 疾病과 貧困은 相互間에 原因과 結果로서 惡循環하고 있다.

(4) 母子世帶

生産的 機能을 營爲할 中心에 있는 父의 喪失(死亡, 離婚, 別居, 遺棄等)로 인하여 貧困의 狀況에 處하는 家庭形態로서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받는 代表的인 것의 하나이다.

母子世帶의 母는 子女에게 對하여 家庭에 있어서 父의 役割을 引受해야 할 뿐 아니라 職業人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해야 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役割의 負擔에서 母子關係가 危機的 狀況에 있다. 또한 農村에 있어서는 家計의 不足의 基底로 夫가 長期出稼함으로 實質的인 母子家庭인 家族이 增加하고 있다.

여기서도 夫婦의 葛藤과 緊張이나 子의 家出等의 病理的 狀況은 貧困에서 派生하고 있다.

(5) 老人世帶

세월 지난에 따라 構成되는 世帶는 老令으로 生産的 機能을 喪失함에 따라 絶對的 貧困家族의 危機에 處하게 된다.

老人世帶는 扶養을 期待되는 成人인 子가 없는 경우가 많다.

現在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받고 있는 老人世帶는 해마다 그 比重을 높이고 있다.

또한 未成年의 獨立前의 子나 孫을 부담하고 해를 보내는 世帶는 生活資力의 減退한 老人이 扶養하는 子나 孫을 養育負擔함은 貧困化의 病理와 狀況에 處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이 어떤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받고있는 絶對的 貧困家庭에서 는 世帶類型으로서 多子世帶나 世帶主의 퍼스넬리티에 飲酒, 도박等의 習 避을 지닌 不道德世帶等이 있다.

(6) 相對的 貧困家族

資本主義 社會體制에서는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서 消費生活의 選擇的 多樣化가 일어나며 耐久消費材나 雜費等의 家計費目에서 소위 문화 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消費가 活發하다.

이와같은 家計의 消費構造의 變化는 消費의 抑制에서 消費의 充足에 日 常生活의 規範을 移行시키기 위하여 意識上 으로는 絶對적인 欲望의 不 滿과 欠乏感을 가지고 있다.

日本의 家庭經濟는 敗戰後 10年을 지나 1955年에는 戰前에 生活水準 을 回復하고 1965年에는 이를 上廻함으로써 戰前의 約 2倍의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

그에 關聯하여 物價의 上昇과 收入의 相對的 不足때문에 主觀的으로는 絶對的인 經濟的 貧困化의 危機意識을 느끼게 된다.

또한 個人이나 家族의 消費가 向上되고 社會的 資源의 共同消費는 현 저하게 낮아지고 住宅, 쓰레기處理施設, 下水道, 道路整備等이 向上되는 것은 相對的으로 貧困感을 가지게 된다. 이와같은 主觀的인 意識의 위에서는 相對的인 貧困 家庭이 社會體制의 處理가 되는 것은 客觀的으로도 相對的 貧困家庭이라

할수 있다.

資本의 獨占化의 過程中에서 轉業이나 停年으로 因하여 強制 浪職이 되어 지금까지의 生活水準에서 低下되는 것이다.

거기서 生活規模를 壓縮하고 人間關係나 社會關係를 整理하여 生活構造의 縮少를 초태할 수 밖에 없다.

어찌든간에 相對的 貧困家族은 私的인 生産手段에 의하여 家族의 生活水準이 左右되는 社會體制에서는 社會的 地位에 따른 生活水準의 差別이나 所得水準의 下降이 一般的으로 承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解消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五) 老人世帶

産業化, 都市化의 進行은 家庭形態에도 變化를 일어켜 老人夫婦와 子女夫婦가 別居하는 核家族의 形態가 增大되고 있다.

이 核家族化는 단지 形態上의 量的變化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家族의 人間關係에 있어서 質的인 變化를 意味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親子를 中心으로 하여 家族生活를 營爲하더라도 夫婦의 結合을 主軸으로 하는 人間關係로 移行하는 變化에 있다.

日本の 民法에서 戰前과 戰後의 큰 差異가 있음을 볼수 있다. 前者가 家繼承을 위한 親子關係를 重視하는 民法인데 對하여 後者は 夫婦의 人格과 結合을 中心으로한 家族關係를 規制하는 民法이다.

이와같이 夫婦中心의 核家族化를 實現하는 老年期에는 獨立하여 子와 別居하는 老人世帶가 增加하는 것은 當然豫想되는 것이다.

(1) 夫婦老人世帶

Glick의 家族周期의 研究에서는 老人夫婦만의 時期는 家族의 生活周期의 中에서도 經濟的으로 困窮한 時期로 特徵되고 있다.

日本の 1930年 當時의 家族周期에서는 末子が 結婚하는 年에는 父親 또는 兩親雙方이 死亡함으로써 老人夫婦만의 時期는 無에 가깝다.

그후 1960年(30年後)의 周期에서는 末子が 結婚한 後에도 兩親健在의 老人夫婦의 時期가 10年에서 13年間 存在하는 變化를 가져왔다.

따라서 核家族의 形態를 가진 경우 老年期에 夫婦만의 時期는 다음에 길게 家族周期에서 본 老人夫婦만의 時期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日本の 賃金體系는 依然함으로써 生活給의 性格을 脫皮하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때의 勞動力이 不足해 賃給을 減하는 中에 老人의 勞動의 機會는 減해되고 있다.

또한 老後를 위한 貯蓄과 年金도 物價의 上昇에 따라서 貨幣價値가 下落함으로써 老後의 夫婦에게 經濟的 不安은 深刻하다.

다음에 老人의 needs에는 健康에의 不安이 있으며 老夫婦만의 世帯에는 夫는 疾病의 看護나 日常의 對話를 妻에 期待하고 있음에도 妻는 一般的으로 夫에게 그것을 期待하지 않는다. 夫婦가 病弱한 경우 事態는 심각하다.

또한 老人은 사랑에 대한 要求(needs)가 强하다. 그러므로 孤獨과 같은 心理的 特性이 나타낸다. 특히 夫婦中心의 生活慣習이 定着해 있지 않는 경우 子女와 別居하는 老人夫婦는 子女의 日常的 接觸을 통해 받는 愛情을 얻지 못해 孤獨化 한다.

또 老年期에는 自己의 存在를 社會的으로 認定받고자 하는 欲求가 높

아 職業이나 社會的 活動을 活潑하게 하려는 老人夫婦世帶는 自己自身의 社會的 有用性を 發揮할 機會를 얻지 못해 地域社會로부터 孤立化한다.

이로인해 老人夫婦世帶는 經濟的 自立성이 弱한 世帶라는 點에서 社會的 活動의 場을 잃고 別居하는 子夫婦와의 間에 經濟的 紐帶나 協助的 機能도 잃고 있는데서 家族病理가 있다.

(2) 單身老人世帶

夫婦老人世帶 어느쪽 配偶者가 死亡하는 경우 核家族의 終局의 生活은 一人 황혼의 世帶이다. 一般的으로 老後의 單身世帶는 妻를 잃은 夫보다 夫를 잃은 妻의 경우가 많은 現象이다.

Glick 의 研究에 의하면

美國에서는 妻를 잃은 夫는 平均 7.5年間, 夫를 잃은 妻는 15.8年間 男子의 2倍 以上の 生存하고 있다.

核家族化의 進行에서 歐美的 都市에서는 65歲 以上の 20%로부터 30%가 獨居生活을 희망하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1960年의 家族周期에서는 老婦人의 경우 平均 約 7年間 時期가 있다. 今後 1人만의 老人世帶는 점점 增加할 경향이 豫想되고 있다.

單身老人世帶에도 不安은 貧困과 疾病과 孤獨에 對한 不安이 있다.

여기에 젊은때 家族生活中에 生活空間과 時間을 經驗이 적지않은 경우는 孤獨에 인내하지 않았다.

원市の 老人調査에서는

配偶者を 잃은 老人에서 心理적으로 孤獨을 호소해 오는 것은 女子보다 男子의 경우가 많고 또한 獨身老人의 孤獨病이 적지않은 報告가 있다.

그러나 單身老人보다 子夫婦나 孫과 同居하는 경우가 孤獨하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

夫婦中心의 家族的 風潮 가운데는 同居하는 子夫婦로부터 疎外됨으로서 同居老人이 孤獨하다. 또한 單身老人世帶의 경우는 企業體나 地域社會에 있어서 勞動이나 社會活動으로부터 疎外되고 社會적으로 防衛하는 家族的 手段을 가지지 않으므로 直接의 被害者가 된다.

(3) 扶養家族을 가진 老人世帶

未成年의 子 또는 孫을 가진 老人世帶의 경우는 生活資力이 減退한 老人이 扶養하는 子 또는 孫을 가지고 있어 貧困化의 病理的 狀況에 處하여 있다.

以上の 老人世帶는 今後 社會적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老人世帶는 身體的 條件이나 家族構造의 欠損으로부터 機能上的 한계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機能의 障害를 克服해야할 社會的 狀況의 老人世帶를 社會가 그의 헨디캡을 補充하던가 老人世帶의 家族的 機能을 圓滑하고 充分하게 遂行치 않는 狀況에 있을때 老人世帶는 社會病理로서 顯在化하게 될 것이다.



第四章 家族集團의 病理와 福祉方法論

第四章 家族集團의 病理와 福祉方法論

第一節 社會病理學과 社會福祉의 關聯

社會病理學的 理論的 實證的 研究은 社會學, 精神分析學, 心理學 등의 行動科學을 背景으로 展開되어 왔다. 그것은 具體的인 社會病理現象의 發見과 그것의 記述的, 人間生態學的分析의 段階에서 潛在的 諸要件의 構造, 機能的分析에 이르기까지 研究方法의 展開가 있다.

그러나 社會病理學的 研究의 方法은 固有의 制度下의 價置基準에 비추어서 「反社會的」 「不適應」 「解體, 不統合, 不均衡」 등으로 說明되는 바와같이 主觀적으로 把握되는 것이 많았다. 또 「全體社會 - 小集團」 「社會的文化 - 副次的文化」의 레벨에서 機能的 - 逆機能的 行動이나 要件의 解明을 보았다.

이 경우의 分析方法은 對象으로서의 行動, 類型이나 集團狀況에 대해서 固有의 主觀的 價置에 근본이 되는 決定을 일단 排除할 것을 前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튼 社會病理學 研究에서는 行動科學이 取扱하는 範圍內에서 求하는 社會的 事實을 現代社會에 있어서 體制, 階級的現實과의 關聯에서 보다 積極的, 實踐的 課題로서 解明을 求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現實體制下에 있어서 社會問題를 社會的實踐의 對象으로 假定하고 그 具體的인 例를 「疎外된 勞動」 「大衆文化의 背景」 등에서 求하고 「生産的, 主體的人間」 「人間性的 獲得」 「生活의 維持」 등의 社會福祉의 實現을 沮害하는 基礎的 諸要件을 把握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問題를 提示한다면 「社會病理學理論은 결국 社會福祉의 實踐領域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하는데 있다. 前에는 주로 독일의 社會政策論에 基礎를 두고 實踐社會學的 研究方法이 提示되었다. 거기에서는 社會的事實을 단지 存在하는 것으로서 客觀的으로 把握하는데 있지 않고 그중에 介在하는 社會的理想을 問題로서 든다면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되는 政策을 科學的으로 究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거기서 는 存在的 認識을 넘어 規範的 認識을 포함하여 모든것이 當爲의 科學 (Sollems Wissenschaft)로서 出發을 보았다.

그러므로 社會問題解決에 關聯하여 經濟政策, 社會政策等으로 指向함과 동시에 反體制的 理想이나 政策에 대한 評價도 研究方法의 實踐的課題中 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實踐社會學은 方法論的 整備가 되었다해도 實際 對象으로 서 求하는 課題는 既存의 政治學, 經濟學의 領域의 一部를 가린데 불과 하며, 實證的研究을 缺하고 抽象的觀念論 = 社會哲學에 머물러 있다. 端的 으로 말하면 制度的 變革이나 政策論은 前面에 提示되었다 해도 그 基礎로서의 人間行動이나 生活의 具體的인 認識이 缺如되어 있다.

말하자면 變革과 함께

人間行動 = 感情 · 態度 · 知能 등의 퍼스넬리티의 變化,

家族 · 地域社會의 生活에 관련된 文化 · 生活樣式의 變容,

또는 制度的 · 物質的 諸條件의 變化와 같은 人間性的 變化,

變革을 推進하는 指導者가 베푸는 役割에 대한 追求,

大衆의 그에 대한 態度 等에의 實證的인 解明 · 檢討가 충분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餘裕를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一部の 實踐社會學이 베푸는 目的은 이따금 주어진 體制內에서 均衡·統合·調整 = 調化的一體化에 있다고 하고 그 意味에서 福祉에 있어서 技術論的 論議와 研究가 展開되는 點에도 特徵을 가진다. 從來의 社會學的研究의 많은 「實踐」의 研究의 領域을 거기서 設定된 中心의 理論을 背景으로 하여 「派生的·應用的 研究」(applied sociology)로서 취급하고 具體的인 社會病理現象의 追求를 보는데 머물러 있다.

그 限度에 있어서 모든 「應用社會學的研究」로서 位置가 定해진 社會病理學의 方法에서 福祉로 向하는 具體的方向을 充分하게 示唆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社會學, 社會病理學의 研究領域이 가진 福祉의 實踐으로 向한 位置, 關係 및 役割에 대해 整理해 본다. 從來의 社會學이나 社會病理學 研究에서의 「福祉」에 대한 接近方途의 대부분은 階級論的 視點을 가지지 않고 또한 反體制運動의 妥當性을 示唆하는 일익을 담당할 강력한 武器가 아니었다. 그 意味에서는 福祉·實踐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缺했다고 할 수 있다. 그 反面에 J.P 살들의 指摘에 본 바와 같이 社會學·社會病理學 研究에 있어서 實證的 諸理論은 巨視的 레벨에 있어서 經濟, 政治, 歷史的 諸要件과 人間行動, 生活方針에 나타나는 具體的方向과 問題를 연결하는 媒體로서의 有効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補助的方法 - 調査, 檢査, 統計, 其他 - 의 정확함에 따라 歷史的 全體化의 一時的 契機로서 具體的인 人間과 그의 人間生活의 物質的 條件間에, 人間關係와 生産關係의 間에 個人과 階級 기타 모든 種類의 集團과

의 間에 새로운 諸媒體를 明白히 하는데 있다).

따라서 從來의 社會科學에 있어서 맑스主義的 實踐理論의 誤認으로서의 問題點을 살뜰은 다음 두가지 點에서 要約한다.

(1) 個人에 대하여 그의 個人的 利害에 反해서 힘을 휘두른 「階級的 利害」나 복잡한 人間關係를 가진 現實的인 問題의 指摘에 있어서도 그의 「集團的存在」의 性質이나 由來에 대하여 不確實한 그대로 머물러 있다.

(2) 物質崇拜의 理論은 그후 적극적으로 展開되지 않고 그것은 모든 人間行動 = 社會的現實에 대하여 檢討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社會有機體 理論을 排斥하면서도 그와 對抗하는 理論的武器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實踐科學과 같은 性格이나 立場에서 보면 社會學, 社會病理學은 一種의 「超經驗主義」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會病理學的 研究理論의 福祉에 대한 實踐的 役割은 단지 問題解決의 技術이나 方法을 具體的으로 提示하며 또는 安易한 抽象的 一般化에서 그의 變革의 必要나 方法을 적극적으로 提示하는 것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社會學은 現實의 社會階級構造·體制 및 그 派生物 制度의 矛盾을 明確히 追求하고 동시에 그 變革보다 더 바라는 福祉의 狀態로 인도하기 위해 實踐的社會諸科學과의 總合을 한편으로 目的으로 하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積極적 運動을 現實的, 歷史的 裏面에서 나타내는 人間行動, 生活을 통한 具體的인 內容을 더욱 확실히 科學的, 體系的으로 잡고

그 運動을 바르게 方向을 定해 媒體로서의 役割을 하는데 있어서 性格을 定하는데 있다. 從來 社會病理學的研究가 그러한것과 같이 社會的 事實의 單純한 一般化와 그의 記述的 說明으로 끝나지 않고 發見된 事實에 대하여 本質的側面 = 原因이 되는 社會階級構造, 體制로 積極적으로 연결되는 究明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社會病理學的研究와 社會福祉研究를 연결시키는 實踐的方法은 그 意味에서 從來의 社會病理學的 方法과는 다른데 있다.

第二節 家庭病理에 있어서 實踐課題

家庭病理研究를 背景으로 하는 實踐 즉 問題解決의 方法은 社會福祉의 諸技術 말하자면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技術等과의 關聯과 함께 展開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分析

「社會行動 = (Personality - 小集團 = (文化 - 副次的文化) - 社會制度」와의 構造·機能的 分析에서 머물러 있는限 實踐의 方向의 視點은 技術的診斷·治療라고 하는 段階에 머물고 問題를 規定하는 基本的·本質的인 側面에의 積極적인 解決으로 視野를 缺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社會福祉研究에 있어서 政策學, 制度論(社會保障研究) 등의 分野를 통한 歷史的, 政策論的 視點은 「社會體制 - 階級構造 - 現實에 提示되는 諸制度(顯在的文化)」말하는 것을 設定한다.

(一) 社會福祉技術과의 關聯

우선 技術論的 視點에 있어서 福祉研究의 實踐의 性格을 整理하고자 한다.

社會福祉事業이 가진 性格의 歷史的展開를 본다면 社會問題, 貧困에 대한 慈惠의 貧困救濟에서 防貧으로, 私的扶助에서 公的扶助·國民的權利로의 變化를 본다. 그 경우 福祉의 對象을 病理學的 視點에서 實證的 檢證을 통하여 個別的으로 解決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專門的 Worker 에 의한 問題解決은 과거의 慈惠的, 慈善的, 部分的인 救濟事業에서 보았던 方法과는 全然 性質이 다르다.

端的으로 말하면 人間의 福祉는 受動的인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人間의 權利로서 能動的인 것이며 社會制度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手段과 方法을 人間에게 주어진다 고 하는 技術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福祉의 對象은 人間이 社會生活을 하면서 直接的, 經驗的으로 가지는 「欲求」의 狀態를 말하며 그것을 「危機的·問題狀況 Crisis or Problemsituation」으로서 work = Client organize = 一般大衆·市民等의 直接的關係를 통한 具體的 問題解決을 求하고 있다. 따라서 또 그 特徵은 「社會事業(社會福祉)이 하나의 社會的 技術이며 行爲主體(Work)가 對象에 대하여 機能할 때의 過程 - 手續의 體系」에 그 理論的 檢討를 더한다. 이 경우 當事者(社會福祉의 實踐家)는 그 職務遂行을 위하여 充分히 檢證된 科學的 知識과 實踐能力을 구비함과 동시에 問題解決을 할때 效果的이고 能率的으로 그 活動이 이루어지는 過程手續의 體系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個個의 技術論의 展開에 있어서 그 方法의 相違는 여러가지 있다. 個別的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專門的從事者가 여러가지 立場에서의 役割遂行을 可能한限 體系化가 求해진다. 말하자면 個別的·特殊的問題의 解決에 대해서도 Social Case Work, Social Group Work, Community organiz-

ation의 技術이 採用되고 거기다 社會福祉의 制度的 側面에까지 도달하고 總體的인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大衆的레벨에서 實施되는 社會運動으로서 Social action 또는 「社會改革 Social reform」 등의 技術을 들수 있다. 社會福祉의 諸技術을 통한 對象으로서의 問題(need)의 發見 및 分析은 결국 問題의 所在을 個人的 行動 및 集團의 狀態中에서 취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機能的 要件으로서 「個人的 Personality → 小集團(家族) → 文化 = 社會制度 → 社會階級構造」를 들수 있고 그 構造와 機能的分析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社會福祉制度·Service體系에의 效果測定이 다른 한편으로는 個個의 need에 대한 技術的 方法의 檢討가 이루어 지는데 있다. 더구나 福祉技術의 對象은 狹義의 問題現象에만 限定되고 그 解決에 멈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편으로는 Social action 技術이 大衆의 組織化나 制度的 變革까지 目的으로 해서 展開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開發(Community development) 또는 各種計劃을 포함한 社會開發도 廣義의 福祉를 目的으로 社會計劃으로서 그 技術的 整備가 展開되는데 있다.

이와같은 社會福祉의 技術論은 많은 側面에서 社會學, 社會病理學의 研究의 課題와 共通되어 있고 同時에 그 實證的 研究의 成果는 諸技術의 展開와 關聯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福祉技術의 有効性은 많은 경우 制度的 變革에 머물고 주어진 體制內에서의 機能을 결과하는데 멈추어져 있다고 하는 問題를 남기고 있다.

□ 社會·經濟政策과의 關聯

社會福祉技術에 對應하는 政策에 대해서 보고져 한다. 政策論에 있

어서 社會學的 視點에서는 「社會政策은 단지 經濟政策으로 보지 않고 人間社會의 階級構造의 矛盾에서 생기는 社會問題 全般을 對象으로 하는 人間政策」으로 考慮되고 또 「社會的技術 一般으로서의 政治의 主要部分에 對應하는 것」이라고 취급된다. 한편 實踐科學과 社會政策의 關聯에 대해서는 「社會政策學은 社會諸科學의 實踐的 諸部門의 總合에 있고 實踐社會學은 일단 초월하나 그의 中心은 實踐社會學에 있음과 동시에 實踐社會學은 社會政策과 同一視된다.」고 되어 왔다. 그러나 社會經濟政策論에 대해서는 視點이나 立場의 一致를 보지 못한 것과 같이 행동과학을 통털어 그 政策學的 視野를 넓혀 그위에 무엇을 對象으로 求하는 것에 대해서도 畵도를 하나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現實의 社會體制 또는 限定된 資本과 勞動,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있어서 勞動問題가 취급되었다. 거기서는 具體的 問題로서 失業, 貧困 등의 모든 本質的인 社會問題에 求한다. 다시 말하면 勞動者階級이 生産關係에서 脫落한 結果 發生하는 流動的, 潛在的, 停滯的 過剩人口와 그 最下層으로 沈澱하는 要 保護貧民階層의 問題를 어떤 方法을 통하여서라도 解決하는 것이 政策論에 있어서의 方法의 課題라고 하겠다.

端的으로 보면 政策學的研究의 焦點으로서 취급되는 對象은 經濟的 社會問題에 있고 그 方法論과 問題에의 接近方法이 다르더라도 經濟政策論, 政治的 實踐論의 兩者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政策主體의 側에서 그 方法 또는 勞動問題에의 接近이 存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이야말로 勞動力의 側에서 더욱 從來의 社會問題研究에 있어서 行動科學的 研究方法의 範圍外에 있

있던 巨視的 視點과 그 解決로 向하는 具體的인 實踐의 方向을 求할 必要가 發生하고 있다. 그러나 從來의 社會福祉研究에 있어서 政策學的의 視野는 오히려 勞動問題研究과 接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福祉의 對象을 主로 結果的으로는 現實의 社會制度 = 社會階級 = 社會體制로 向하고 그 關聯에 따라 勞動, 貧困, 失業等의 社會問題에 焦點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기서는 福祉의 實態를 「生産과 消費를 연결하는 時代의 經濟 및 社會組織과의 機能的構造를 가지는 實態에 있고 이것을 떠나서는 社會福祉에 있어서 本質的인 것이 把握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從來의 社會政策學에서 보여준 經濟理論中心의 方法論과는 달리 社會學的의 接近을 이미 보여 주었다. 以上으로 社會福祉의 方法에 있어서 巨視的, 階級論的의 視點에서는 現實의 體制·階級構造中에 內在하는 問題와 經濟組織의 變革·政治的實踐方法으로 向해진다. 그것은 技術論的 視點에서 본 現象으로서 顯在化하는 具體的인 問題를 그의 本質的 原因에 근본을 둔 派生的 社會問題라고 한다면 巨視的 視點에서는 그의 原因이 되는 本質的 社會問題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서 具體的으로 勞動에 있어서 人間疎外 失業·貧困에 代表되는 本質的 社會問題의 解決은 다만 現實의 制度的變革을 目的으로 한 政策論을 초월한 提示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社會病理學的研究의 課題가 겨우 到達했다고 볼수 있으며 「現代社會에 있어서 人間과 그 生活에 關한 問題」에 留意하고 싶은 것이다. 福祉의 對象을 단순히 問題를 가지는 個人이나 集團에 대한 課題로서 좁은 視點에서 把握하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對象을 求해야 할 것이다. 福祉만이 아닌 手段을 現實의 大衆社會에서 求하고 從來의 한정된 범위

를 넘어서 對象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는 직접 問題를 가지는 人間 일지라도 모든 「無關心層」을 그 對象에 넣어두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와같은 階層을 直接經濟的 貧困이 아닌 手段 = 要救護貧民만이 아니라 大衆의 레벨에 있어서 그들의 社會, 經濟的關心, 主體的意欲生活이 充分하게 餘裕가 보이지 않는 同時에 生活의 目標을 상실하지 않으며 不安, 孤獨에서 해방되는 機會가 주어지지 않는 現代社會에서 發生하는 「人間」과 그 生活의 存在에도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데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Social action에 代表되는 技術論的方法을 취하고 現實의 制度的矛盾, 缺陷에 대한 實踐의 必要가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大衆運動, 階級的組織化를 통하여 問題解決의 길을 어떤 科學的, 積極적으로 提示할 必要를 그 方法論的視點에서 求할 수 있다.

그러므로 技術的方法과 從來의 體制的維持에 연결되는 政策論을 止揚하고 그 變革의 길을 提示하는 積極的理論의 展開에 따라 科學적으로 追求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政策論과 技術論의 研究分野는 相異한 二者가 아니고 社會福祉의 實踐에 있어서 兩輪이 된다. 또한 實踐理論의 成立에 있어서 留意할 點은 從來의 社會病理學的 視野를 떠나서 그 對象을 固有의 病理現象에서 그 發生을 물러나서 現代社會에 있어서 人間 및 生活의 基礎로서의 社會構造에 대하여 積極적으로 指向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三節 家庭病理와 社會福祉研究的 接點

從來의 社會病理學的 研究가

問題는 資本主義 社會下에서 人間과 그 全生活중에 共通으로 內在하는 것으로서 把握되지 않았다. 또 社會病理的 行動이 그의 生活構造自體를 媒介로서 解明되지 않았던 點에도 있다.

以下에서 社會病理를 生産하는 媒體로서의 生活을 가지는 諸構造要件을 整理하고 生活이 構造的으로 어떤 要件에 의해 이루어져 있나를 그의 個個의 生活레벨을 통해서 보고져 한다.

- (1) 都市化, 機械化, 自動化에 주어진 生活의 時間的 側面
- (2) 勞動遂行 및 그 過程에 있어서 生活側面으로서의 生産的 活動
- (3) 大衆化=大量消費, 또는 大衆文化의 普及에 따른 生活目標의 大型化, 畫一化, 等を 中心으로 消費的 活動의 生活레벨
- (4) 政治的 無關心 및 그 原因과 疎外克服에 연결되는 實踐的 社會生活의 레벨의 4가지로 區分하고 生活의 構造的, 機能的 要件에 對하여 分析을 하고져 한다.

(1) 生活의 時間的 側面

現代 機械文明에 따른 社會的 性格의 하나는 그의 時間的 規則性에 있다. 日常生活에 있어서 勞動의 리듬은 時間에 따라 區別되고 또 人間の 價値는 그 勞動遂行에 있어서 時間的 尺度에 따라 測定된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time-mechanism과 그의 機械的 慣例에 있어서 生活側面에 대하여 3가지의 機能을 設定하고 있다.

(가) 規則的인 行動을 支配하는

(나) 社會生活에 있어서 共同的 秩序 相互關係의 形式化를 規定하는
社會的 機能

(다) 一定한 勞動時間에 따라 測定되는 金錢的인 尺度로서의 經濟的
機能

테크놀로지 (technology)의 發達은 機械主義化, 自動化를 發展시키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人間을 規則的 時間에 따라 拘束한다.

資本이 가지는 機械的 權力으로 成長하고 人間の 生活을 抑壓한다.
그러므로 機械化에 의하여 주어지는 時間的 리듬은 人間性을 剝奪하고,
同時에 主體的 自己의 喪失·疎外를 가져온다. 다른한편 規則的 機械文
明이 주는 人間の 勞動 또는 生活의 리듬의 畫一化는 人間の 生活리듬
을 파괴하는데 이르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生活時間 때로는 餘暇生活에 있어서 生産的 消費의 方法
을 착각하고 自由가 가진 個性的인 生活의 樂을 파괴한다고 한다.

(2) 生産的 活動에 있어서 生活側面

人間은 勞動의 遂行을 生活手段으로서 職業生活에 從事한다.
人間の 勞動生産物과 그 生産的 活動에 있어서 人間の 意識와 關係없이
그에서 疎外된다. 또한 生活目標로서의 勞動이 아니고 手段으로서의 職
業 및 勞動은 苦痛을 수반하고 生活의 充足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
創造的 價値로부터 떠나 있을 경우 人間은 疎外된다. 同時에 그러한
人間相互의 關係는 親密性을 缺하고 形式的인 人間關係를 發生시키는 結
果를 초래한다.

따라서 本來 生産的, 創造的 活動에 있어야 할 勞動은 항상 資本蓄積의 手段으로 化하고 勞動力은 항상 資本의 一部分이 되고 있다.

그의 生活에 있어서 人間勞動이 遂行되는데 비추어서 그들의 生活은 貧困하게 되고 그의 人間價値를 떼어서 팔아버리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職場에서 販賣員과 顧客의 關係에서 보는 形式的, 表面的 接觸의 形式은 「쓸쓸한 自我의 表示」이며 人格의 喪失에 있는 點은 Mill을 통해 본 바이다. 다른한편 勞動을 통해서 본 生産的 活動의 目標은 前에 느꼈던 藝術的 價値나 創造의 樂을 맛볼 수 없다.

結局 勞動對象은 항상 生産者의 손을 떠나 資本에 附着하는데 있다. 또한 勞動은 生産的 目標을 떠나 消費的 活動이나 社會的 地位獲得의 手段이 되어 있는 點을 볼 수 있다. 最後로 生活을 받쳐주는 生計費의 獲得이나 그 計劃에 있어서 現實의 勞動을 手段으로 얻는 賃金이나 俸給은 항상 不充分的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生活의 리듬을 혼란하게 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3) 消費活動에 있어서 生活側面

生活構造의 第三의 側面으로서의 人間의 消費生活에 있어서 行動樣式은 주로 메스메디아를 통해서 또 그것을 가져오는 大衆文化중에서 形成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指摘된다. 그러므로 現代에 살고있는 人間의 生産的 活動에 있어서의 問題= 疎外된 勞動과 對應하여 非生産的인 消費生活이 거기에 展開되고 있다. 生活에 있어서 餘暇의 追求가 勞動에서의 必死의 逃走가 아닌 限 無意味한 것으로 指摘되며 餘暇生活에 있어서 「커다란 空虛(great emptiness)」를 볼 수 있는 點도 共通이다. 消費

生活에 있어서 第一의 問題는 餘暇 및 餘暇消費의 形態에 있으며 그것은 항상 勞動에서의 逃避에 있으며 價値創造的인 機能을 가지지 않고 生産的인 機能을 削減시킨다고 하는 意味에 있어서 疎外되는 生活側面을 가지고 있다. 第二의 問題는 大衆文化가 모든 人間의 生活行動에 끼치는 영향에서 理解된다. 말하자면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普及되는 生活文化=이미지(image)로서의 文化나 非現實的 生活目標은 많은 人間에 대해서 現實의 生活이나 目標間에 커다란 차이를 가지며 欲求不滿의 축적을 發生시키는 結果를 만든다.

同時에 文化的 生活目標은 物質的, 金錢的 尺度에 따라 形式化되고 그 實現이나 達成에 있어서 人間의 어떠한 個人的 勢力을 통해서도 不可能하다고 하는 비극을 創造하고 있다. 따라서 非生産的, 荒廢的인 大衆文化에의 行動의 客體化와 逃避는 그 消費行動에 있어서 選擇되고 있다. 그러나 消費生活에 있는것 보다 重要的 問題는 그러한 大衆文化를 形成하고 그 維持를 許容하는 制度的 規範 또는 그 背景에 있는 經濟的, 政治的 權力構造의 存在에 있다. 그것은 大量生産, 大量消費와 流行이라고 하는 消費行動의 形式化를 만들며 동시에 먼저 이루어진 金錢的 價値의 至上性이라고 하는 思想을 裏面에서 나타낸다.

mass media의 Commercialism은 獨点資本과의 연결을 더욱 強化하고 報道나 世論의 選擇과 形成을 더욱 自由롭게 하고 있다.

消費行動에 있어서 固有의 形式은 그러한 支配關係에 있어서 形式化되고 그 結果 一般大衆이 가진 固有의 傳統的 價値나 自由는 主體的 自己를 喪失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現代社會에 살고있는 人間 및 그 生活에 共通하는 側

面으로 指摘되고 있다.

(4) 實踐的 活動에 있어서 生活側面

現代社會에 살고있는 人間에 있어서 共通되는 第四의 生活側面은 政治的 Anomi = 政治的 無關心이라고 하는 現實에 있다.

우선 大衆은 自己에게 주어진 階級的 現實이나 여러가지 社會問題의 出現에 대해서 積極的 理解와 解決에 대하여 實踐的인 役割을 意識的으로 遂行하려고 아니한다. 그리고 現實은 無組織인 被救護的 貧民은 말할것도 없이 組織的인 勤勞階級 또는 一般大衆에 있어서도 더욱 一般的으로 指摘된다.

이러한 生活에 있어서 消極的 實踐 또는 政治的 無關心이라고 하는 生活側面을 버티는 原因의 하나로서 다음 4가지 要件이 考慮된다. 말하자면 端的으로는 政治的 權力組織과 生活의 社會的 距離가 단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가) 政治的 權力에 대해서 「無力(powerlessness)」하다. 그것은 個人的 政治的 活動이 政治事象의 經過의 決定에 가려져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個人的 感情에 있다.

많은 人間은 權力組織이 一般大衆을 항상 支配하고 그 變革에 있어서 厚子와 같은 個人은 無力하다고 하고 있다.

(나) 또 投票의 對象이 되는 候補者들을 理解하지 않고 그에 비해서 權力組織의 成員의 選定에 있어서 人間은 항상 「無意味한것(meaninglessness)」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政治에 意味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感情은 自身の 投票結果가 正當하다고 하는

자신을 가질때에 생기고 있다.

(다) 個人的 政治的 活動에 責任이 있는 한 市民으로서 自身の 責任을 다한다는 義務感을 가질때에 政治的 結果가 항상 自身の 生活과 「斷絶 (estrangement)」되고 있다는 感情을 가진다.

(라) 同時에 確立되는 政治的 權力組織은 大衆의 生活과 直結하는 具體的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항상 有効한 手段을 繼續的으로 提示하지 않는다. 또 政治的 決定은 大衆의 勢力의 總合의 討나 主張과는 無關係하게 高度의 政治的 레벨에서 決定될 경우가 많다.

權力組織 內部에 있어서 對立이나 地位의 爭奪, 政治的 不正에 대해서 항상 不安을 느끼고 그 世界에 社會的 秩序의 喪失을 느끼는 (anomic-Normlessness)」 感情을 지닌다.

따라서 以上에서 본 人間의 政治的 權力組織에 있는 無力感, 無意味, 斷絶=絶望, Anomic 한 感情은 必然的으로 政治的 疎外를 생기게 한다.

그 結果로서 疎外된 人間行動의 類型을

(A) 理性的 行動樣式 (rational-actionism)

(B) 退行 (Withdrawal)

(C) 客體化 (projection)

(D) 同一化 (identification)라고 하는 形態를 明示하고 있다.

結局 앞에서 본 人間의 生産的, 消費的 生活行動에 있어서 社會的, 文化的 諸要件은 人間의 實踐에 대한 積極的 意圖를 항상 混亂시키고 麻痺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現代社會의 問題는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共通된 狀況中에 基礎를 두고 있다.

더욱 그중에도 現體制下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內在化되고 있는 人間疎外 一生活의 無秩序-混亂-欲求不滿의 畜積-非生産的 解決方法 等 一般的 現狀은 社會病理學的 研究에 있어서 항상 包含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留意할 社會病理學的 研究의 對象이 있는데 그것은 現代에 살고있는 人間이 主觀的으로는 疎外 또는 그 解決的 手段이나 方法에 있어서 正當化하고 거기에 美的, 憧憬的인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意識的으로는 疎外되나 自己나 그의 주변의 세계에 參加하고 그것을 讚美하고 있는 點이다.

그것은 性的 快樂이나 不道德한 生活이 物質的 價値의 對象으로 취급되고 또 社會的 地位의 심볼이 되며 다른 面으로는 小說, 文學, 音樂等의 世界에서 그것이 美化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社會病理學的 研究의 對象은 이와같은 點에도 그 開拓의 餘地가 남아 있다.

이미 明白히 한바와 같이 Social Case Work 에 있어서의 個人 中心的 診斷에는 限界가 認識되어 그것을 捕捉하는 것으로서, 或은 狹義의 社會的인 志向을 導入하는 것으로서, 全體로서의 家族을 把握하는 것이 問題되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다. (註 11)

이 全體로서의 家族의 檢討는, 必然的으로 地域社會 그것과 關聯하는 側面이 重視되기 때문에, 普遍的 Case Work 의 本質的 課題로서 研究가 要求되어온 때문이다.

(註 11) 孫昌達 “社會福祉事業方法의 研究” pp.103-104

家族診斷의 範疇에서는, 家族成員과 個人的 問題를 集團으로서의 家族全體와의 關聯에서 理解하며, 處遇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個人的 「精神內界의 機能樣式 (Intra-Psychic functioning)」보다는, 家族의 「觀察할 수 있는 社會的行動」 「社會的 機能樣式」(Social functioning)에 焦點이 놓여져 있고, 處遇의 效果를 評價해 가는 Research의 方法도 家族成員 個人에 대해서만 아니라 家族全體를, 그의 「觀察할 수 있는 社會的 行動에 의하여 評價해 가는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家族機能測定의 範疇는 다음과 같다.

A. 家族의 相互關係와 統一

- ① 夫婦關係
- ② 親子關係
- ③ 同僚關係
- ④ 家族紐帶

B. 個人的 行動과 適應

① 兩親의 個人的 行動과 適應

a. 心身-身體的狀況

b. 役割行動

- ① a 夫 또는 妻로서
- ② b 어버이로서
- ③ c 所得提供者로서
- ④ d 主婦로서

② 兒童의 個人的行動과 適應의 能力을 缺知하는 Case 가 있다는 것

② 兒童의 個人的行動과 適應의 能力을 缺知하는 Case 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때에는, Client 의 家族, 其他의 member 의 助力이 얻어지는 경우, Client 以外の 家族成員 등에 대하여 動機造成을 할 必要가 있다.

③ 診斷會議 (Case Conference)

社會的處遇는 擔當 Worker 個人만의 職務일뿐 아니라 社會福祉機關의 機能의 遂行일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各機關에서는 診斷判定會議, 受理會議, Case會議등으로 불리워지는 Case 의 社會的 處遇에 관한 會議를 가지고 있다. 이 會議에서 Worker 는 그가 立案한 社會的處遇計劃, 問題點, 疑問, 不安등을 될 수 있는대로 提出하여 이 會議를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Worker 는 Case 記錄을 主觀的이 아니라 客觀的으로 整理하여 會議의 資料로서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關係者 및 關係諸機關과의 連絡

Case Work 은, Client 와 Worker 와의 面接治療로 終始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關係機關과 關係者의 援助를 必要로 한다. 社會的處遇計劃을 樹立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일이 重要하게 된다.

關係機關과 關係者와의 連絡이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計劃에 蹉跌이 일어나, Client 에게 機關과 Worker 에 대한 不信感을 誘發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M.A. Elliott and F.E. Merrill, Social Disorganization, 1950.

G. Murdock, " the universality of the Nuclear Family " in N.W. Bell

Le play, " La Reform sociale" Tours 1887, 7th ed, Vol, I Section on the
Family, pp.380-519. 것을 李効再 "家族과 社會" pp.20-22
에 引用記載된 것을 참고

E.W. Burgess, " the Family, New York ; American Book, 1963.

W. Waller and R. Hill, The Family, revised edition, 1952.

R. Cavan and K. Ranck, "The Family and the Depression," 1938.

孫昌達, "社會福祉事業 方法의 研究"; 保社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李効再, "家族과 社會" 良潮社.

四方對雄, "現代社會 病理學"

大橋薫
大蔽對一 "社會病理學"

正 誤 表

페이지	行	誤	正
머릿말	上 5	따라 社會病理	따라 數多한 社會病理
1	上 2	家族病理	家庭病理
1	上 4	家族病理	家庭病理
3		家族病理	家庭病理
11	上 6	經濟生活策을	經濟生活 等を
11	下 6	機械	機能
12	上 8	基準活動이	基本活動이
12	下 2	Murdock	Murdock
12	下 2	Clniversality	Universality
12	下 2	Tamily	Family
13	上 8	(A) 父系制	(A)의 父系制
14	下 3	求續性을	永續性을
28	下 9	불수 없는 것	불수 있는 것
30	上 4	社會適應의	社會適應과
31	圖 1	disintegration	disintegration
34	上 1	家族가운데서는	家庭가운데서는
43	下 10	係, 遺棄,	係解消, 遺棄,
48	上 8	夫婦라는것도	夫婦라는 것은
51	下 1	現在收入을	現金收入을
53	上 11	近長에	延長에
53	上 11	夫婦가	主婦가
53	上 13	夫婦가	主婦가
55	上 10	第四期の	第二期の
55	下 7	社會體制의	社會體制나
56	下 5	세월	세월이
57	上 3	理와 狀況에	理的 狀況에
58	上 2	浪職이	退職이
59	上 4	時期는 無에	時期는 全無에
60	下 6	令後 1人만의	今後 1人만의
61	下 5	한계부를	한계를
65	下 9	前題로	前提로
66	上 8	Sollens	Sollens
74	下 5	實踐理論의	實踐理論의
76	上 1	支配하는	支配하는 신체적인 機能
79	下 5	厚子와	原子와
83	上 5	Conterence	Conference
84	上 5,6	것을 ~것을 참고	삭 제

